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2021. 12.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성과가 담긴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전국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도 도입 2년만인 2020년에 전국 자치단체에 모두 배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금년도 상반기 전국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31건(4.7% ↑)가 증가한 9,570건을 처리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섰으며,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에게 지방세 지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세자 고충 해결에 대응하였습니다.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은 납세자보호관으로써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던 점과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들이 수록되었으며, 고충민원처리 분야, 적극행정분야, 홍보&찾아가는 서비스분야의 총 32개 우수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우수사례집이 전국 자치단체에 널리 공유되고 확산되어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사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이 우종



Part 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Part 2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발표대회 수상사례

대상

부산 사하구 대체취득 부재지주에게 플랜B를 제시하다 15

최우수상

인천 연수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 19

부산 동구 shut down? 협치행정으로 극복한다! 23

우수상

부산 영도구 소급 압류 해제는 절대로 불가능한가? 28

서울 영등포구 소멸시효 중단된 체납의 짐을 내려주다 31

Part 3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고충민원처리

제주 서귀포시 영세체납자의 계좌압류 해제로 경제적 회생 지원 41

경남 창원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46

전남 장흥군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추징 규정의 적극적 해석 49

서울 은평구 '고질민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52

광주 광산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즐거움도 잠시, 가산세라니!! 55

경남 김해시 엄마의 마음으로 가산세 벽을 부수다 57

경북 청도군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부과 고충민원 60

광주 동구 부재중 부과된 주민세 취소 64

적극행정

대전 대덕구 권리의 가치, 납세자보호관에서 찾다 69

전북 남원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멸실인정 차량 선제적 압류해제 76

충북 보은군 신청 방문 없이 알아서 척척!! 상속 지방세 환급 79

경기 남양주시 납세자 권익 보호 끝판왕, 납세자보호관 83

부산 수영구	모르면 내야되는게 세금?	91
전남 보성군	납세자와 과세관청 일석이조 우수사례	95
경기 수원시	지방세 납세자의 마음까지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97
충북 옥천군	적극행정을 통한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	100
경남 창원시	배보다 배꼽이 크다	102
충남 청양군	「직권과세제도 도입」취득세 납부방법 개선	105
서울 강남구	장애등급변경 지방세 감면 "미리 알려주는 센스(SENSE)"	108
충북 단양군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납세자보호	110

홍보 & 찾아가는 서비스

대전 본청	납세자보호관! 잠자는 권리도 깨워서 보호한다	115
경북 영천시	지방소득세 카카오톡 채널 신고 창구 운영	120
경북 예천군	납세자 중심의 취득세 감면안내 추진	122
경기 남양주시	납세자 권리 보호 사각지대 발굴	125
전남 목포시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수동적인 지방세 인식 제고	128
대구 서구	협업부서로 바로 달려가는 지방세 코디네이터	130
전남 광양시	현장 중심 납세자보호관 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133

Part 4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발표대회 수상사례

대상

서울 강남구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할아버지의 하소연 139

최우수상

경기 수원시 납세자 권익보호 ~ 민렘이 되어보자 144

대구 서구 언택트 시대 SNS로 만나는 납세자 보호관 150

우수상

경남 창원시 납세자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고충해결사! 154

서울 구로구 Do you have any tax concerns? 158

참고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165
--------------------	-----

1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01 납세자보호관 개요

02 납세자보호관 업무

03 납세자보호관 권한

04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관 개요

내 용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추진(지방세기본법§77□, '18.1.1.시행)

선발기준 지방세 업무경험 있는 4급~6급 공무원

기준요건	특·광역시·도	시·군·구
직급 기준	4급 또는 5급	6급
지방세 업무경력 기준	7년 이상	7년 이상

※ 자치단체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발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표준안)

- ✓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발표대회 수상사례



01 대상

1. 대체취득 부재지주에게 플랜B를 제시하다.

02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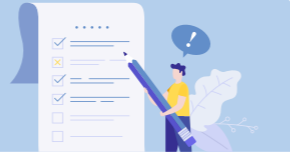
1.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
2. shut down? 협치행정으로 극복한다!

03 우수상

1. 소급 압류 해제는 절대로 불가능한가?
2. 소멸시효 중단된 체납의 짐을 내려주다

대상
01

대체취득 부재지주에게 플랜B를 제시하다.



자치단체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당자 조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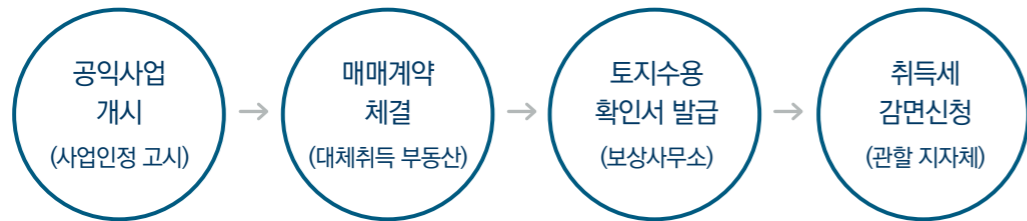
추진 배경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처리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납세자와 세무부서간 다툼의 쟁점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제3자의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대안제시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

사실 관계

- 고충민원을 제기한 김○○씨는 도로개설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부산 □□구 소재의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 3억여원을 구청으로부터 지급받고, 부산 사하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민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은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안내와 함께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광역시 내의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 취득이라는 감면조건을 충족하였다고 취득세감면을 신청하였다.
- 그러나 사하구 세무부서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취득세 14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이에 민원인은 부산에 거주하며, 하나의 생활권인 부산지역 내에서의 대체취득인데도 투기자에 해당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라며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왔다.

[참고1]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신청 절차



해결 내용

- 납세자와 세무부서간 다툼의 쟁점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체취득 감면이 가능한지에 있었다.

[참고2]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 조건

(조건1) 수용대상 부동산	(조건2) 대체취득 부동산	(조건3) 부재부동산 소유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보상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 계약 ▶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시·도 또는 연접한 시·도 내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시·읍·면 또는 연접한 구·시·읍·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

2) "민원신청 조건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플랜A, 거주요건

- 해당 대체취득은 「지방세특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보상법」등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도 내의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 계약 및 취득시기, 취득물건 소재지 등의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 부재지주 감면 요건인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 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 지역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를 충족하지 못한 부산 ◇◇구 내 거주자로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 제외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였다.
- 따라서 민원인이 세무부서에 '거주요건'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가지고는 세무부서의 감면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3) "대안을 제시하다!" - 플랜B, 사업요건

- 다툼의 쟁점과 제출된 증빙자료에 집착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대체취득 감면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지방세특례법 등 관련법령과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사례를 찾아가며, 해당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다각도로 고민했다.**

- 그 결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님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 2가지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즉, 「지방세특례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거주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요건'으로도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민원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부산 △△구에 있어서 **'수용된 부동산의 소재지구와 잇닿아 있는 구 지역에 사업'의 감면요건을 충족함**을 알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민원인에게 '사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과 사실상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대체취득 감면을 재신청토록 안내하였고, 취득시 납부한 14백만원의 취득세를 전액 환급 받았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 고충민원 해결 방안 (플랜A, 플랜B)

방안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 예시도
<p>[플랜A] 민원인과 세무부서간의 다툼 쟁점</p> <p>거주요건으로 판단시 연접한 구에 거주 조건 불충족 ⇒ 부재부동산소유자로 감면 불가</p>	
<p>[플랜B] 납세자보호관의 대안 제시</p> <p>사업요건으로 판단시 연접한 구에 사업 조건 충족 ⇒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어 감면 가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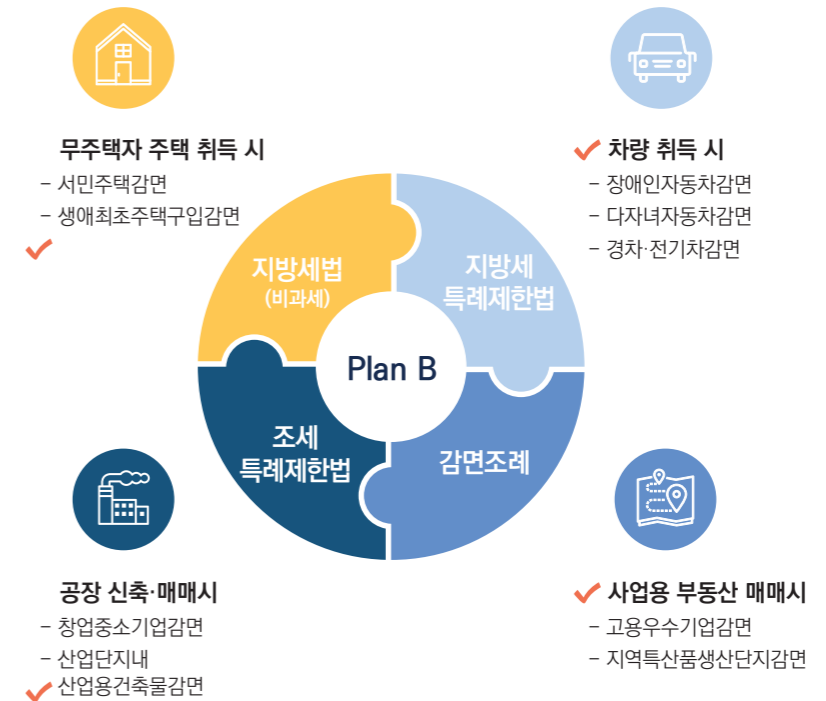
주요성과

신고세목인 취득세의 감면 규정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 규정을 해석·검토하는 것은 맞으나,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세무부서에서는 소극적·일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부득이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의 감면요건 미충족에 따른 세무부서의 감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어서 납세자보호관에게 접수된 고충민원도 수용불가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세 구제제도 역할을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다각적 시각으로 세무부서의 거부처분 사례에 접근한 결과, 납세자의 감면신청 방향과는 다른 대안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분야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반납세자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실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우수상

01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



자치단체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자 유은정

민원 내용

민원인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부동산취득세액 13백만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그런데 등기를 대행한 법무사로부터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니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연수구 세무1과에 확인한 결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처형이 주택이 있으므로 1가구 3주택 해당되어 추가로 7천5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납세자보호관에게 연락하였다.

사실 관계

- ① '21.10.15. 처형·미성년 자녀가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에 세대원으로 전입 (간석동, 본인 소유)
- ② '21. 2.19. 처형이 아파트 취득(송도동 A)
- ③ '21. 2.26. 본인이 아파트 취득(송도동 B), 일시적 1가구2주택 취득세 13백만원 신고납부
- ③ '21. 2.26. 처형·미성년 자녀가 남편(동서)이 세대주인 세대로 전입신고 (세대분리 신고, 정부24),
※ 처형·자녀 전입신고 시각(16시 27분), 신 세대주(동서) 확인 시각(17시 45분), 전 세대주(본인) 확인 시각(19시 12분)
- ④ '21. 3. 2. 담당 공무원 전입신고 수리(9시 33분)
- ⑤ '21. 3.12. 법무사가 21.2.26. 현재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임을 알림, 연수구 세무1과로부터 추가로 75백만원을 납부해야 함을 안내 받음
※ '21.2.26. 현재 본인 세대, 처형·자녀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 1가구 3주택에 해당(1주택: 본인 간석동, 2주택: 처형 송도동A, 3주택: 본인 송도동B)

추진 내용

1. 검토

민원인의 처형과 처형의 미성년 자녀가 사정상 '20.10.15.~'21. 2.26.까지 민원인이 세대주인 세대에 세대원인 상태였고 그 기간 중 처형은 '21. 2.19.에 송도동 A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본인은 '21. 2.26.에 송도

동 B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민원인 세대는 기존 매각 예정이었던 간석동 집을 포함하여 '21. 2.26. 현재 3주택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송도동 B아파트를 취득한 날 세대원이었던 처형과 처형의 미성년 자녀가 원래 세대로 전입신고(세대분리)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 관련 쪽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선 민원인에게 세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하여 추가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 후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과 관계인의 전입신고 관련 절차는 '21. 2.26.(금)에 이루어 졌으나, 전입지 담당 공무원의 신고 수리가 휴일이 지나고 다음 근무일인 '21. 3. 2.(화)에 이루어져 처형의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이 '21. 3. 2.(화)로 기재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민이 전입을 신고한 날과 담당 공무원이 전입을 수리한 날의 차이"로 인해 취득세를 1주택 세율이 아닌 3주택 세율을 적용받아 추가로 7천5백만원을 납부하게 된 경우였다.

2. 검토 결과

이에 주민등록 관련법과 현행 운영실태를 검토하게 되었고, 위 사항관련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1) 전입신고 수리일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로 기재에 따른 문제

- 주민등록은 신고주의로 주민등록법 제23조에서 주민이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수리일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로 기재하고 있음. '즉시'민원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처리하므로 정부24로 같은 날 전입 신고한 경우라도 민원인의 신청 시각에 따라 또는 담당 공무원의 처리 시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전입일은 달라질 수 있음. 전입신고 상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전제로, A 주민센터에 5시 30분에 전입신고한 것을 A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익일에 처리하고, B 주민센터에 5시 30분에 전입신고한 것을 B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당일 6시에 처리한 경우, 같은 시각에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주민등록표에 전입일이 다르게 기재되는 문제가 발생

-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신고와 수리에 대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앞서 제기한 수리일로 운영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사항에 대한 대조·확인 후 이상이 없어 그대로 수리한다면, 수리일이 신고 익일이라 하더라도 신고일이 주민등록표 전입일로 기재되어야 하고, 신고사항에 이상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완료 후 적정하게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날을 주민등록표 전입일로 기재하고 이때에도 수리일이 수정신고 익일이더라도 적정하게 신고가 이루어진 수정신고일이 주민등록표 전입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임

2) 정보통신망 미연계에 따른 문제(방문 신고와 상이한 운영)

- 세대원인 주민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과 미성년 자녀를 전입신고 할 경우, 전입 세대주의 확인만 필요하고 본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므로 전출 세대주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

- 동일한 경우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 세대주의 확인뿐만 아니라 전출 세대주의 확인도 필요하여 방문 신고와 정부24 이용 신고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는 둘 다 세대원이었던 본인과 미성

년 자녀와의 친권 관계를 전산이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로, 가족관계 전산과 주민등록 전산이 연계되어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3. 추진사항

1)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제출(연수구→인천광역시, '21.3.30.)

검토결과 이 같이 법령의 불명확과 제도 운영의 미비로 주민의 재산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전입일을 담당공무원 수리일이 아닌 주민의 전입신고일로 정정하고 전입일과 수리일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다.

2) 주민등록 질의서 제출(인천광역시→행정안전부 주민과, '21.4.12.)

인천광역시 감사관은 우리 구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등록 주무처인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전입일을 담당공무원의 수리일이 아닌 주민이 신고한 날로 정정"내용을 질의하였고

3) 지방세 해석민원 신청서 제출(연수구→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과, '21.4.2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의 선 제안으로 연수구 세무1과에서 "동일한 날짜에 주택취득과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 수 판단 방법" 관련하여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질의 회신('21.5.7.)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에서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지로 회신하였다.

지방세는 납세자의 신고의무 이행 관련 24시까지 전자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신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내부절차로 전입신고(세대분리)가 지연된 이 사안의 경우, 종과세제도 취지 및 납세자의 주택취득과 전입신고(세대분리) 경위 등을 고려하여 취득일 당시 세대분리 되었다고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5) 행정안전부 주민과 질의 회신('21.5.17.)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요지로 회신 하였다.

전입신고는 주민 신고가 아닌 공무원의 확인·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 사안의 경우 전입신고는 '21.2.26. 19:12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음 근무일인 '21.3.2. 09:33에 처리한 것은 적법하므로 전입일을 '21.2.26.로 소급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추진결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의 회신 내용으로 **민원인은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환부 받게** 되었다. 납세자보호관은 전입신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입일을 정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지방세 운영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민원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추가로 7천5백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본인 세대와 처형세대가 서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언니는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동생은 언니가 원망스럽고, **자칫 가정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납세자보호관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 경우였다.

기대효과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세관계법을 검토하여 해결 할 수도 있고 지방세관계법에서 답을 찾기 어려우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연수구는 납세자보호관이 감사실에 있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이용**하게 되었다. 이 제도 자체만으로 본 고충민원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를 통하여 **관련 부서들을 직·간접으로 자극**하게 되었고 **관련부서의 적극적 해결의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전국의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이 하위 감사대상기관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거나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으로, 상급기관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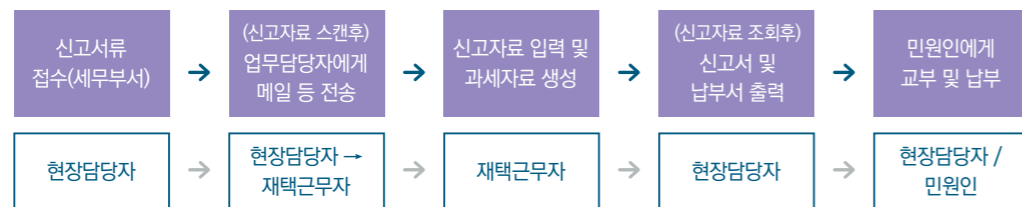


전화, 메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의문사항이나 매뉴얼 적용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격리해제 이후에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방안을 모색하여 자동차세 전자고지본 미확인자료 및 우편반송자료 등을 조회후 재송부하거나 가상계좌 발송처리 하였고 민원인의 전화상담을 원활히 하고자 세무부서 전직원에 대해서 담당팀의 전화착신후 민원응대토록 하였으며, 점심시간 순환근무도 실시 하였다.

이와같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각종 민원의 원만한 처리결과 납기내 징수율이 전년대비 0.4% 상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2)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민원처리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적시처리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어 업무협업체에서는 특히 일일상황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와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자주 오는 법무사나 세무사에게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안내하여 전자신고토록 안내하였으나 방문 신고민원의 경우 파견담당자가 신고서류를 접수하였다. 이때 단순업무의 경우 창구 발급을 원칙으로 했으나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스캔후 재택근무중인 업무담당자에게 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확인·결정토록 하였다. 그결과 격리기간내 취득세 신고납부 및 민원처리 354건, 33억원을 수납처리 하였고 그과정에서 단 한건의 민원사항도 없이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다.



3) 차량·부동산 압류해제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

우리구에서는 매분기가 시작될 때 업무 매뉴얼을 현행화해서 새행정시스템 온나라 지식관리 표준KMS에 탑재해 놓고 있다. 이는 업무프로그램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도식화해 상세설명을 붙여놔서 담당자 부재시에도 누구든지 매뉴얼대로 따라만 하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었는데 이번 격리조치에 따라 파견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직원들은 격리중에도 지방세납부와 관련해 결산자료 부활 및 부동산·차량 등 압류해제로 281건, 98백만원을 수납처리하였으며 재산세와 관련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고 접수 및 지방세 감면신청 등 312건의 각종 민원사항 등을 처리 하였다. 다양한 민원은 빠짐없이 개인별로'민원접수 처리대장'에 일일이 작성하여 처리하였으며, 격리해제 조치후에는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인계해 처리상황을 재확인토록 하는 등 민원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추진성과(맺음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앞으로의 조직문화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우리구에서는 지금껏 상호교류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시해 세무1과 2과가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를 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부서간 방역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감염병 확산 미연 방지조치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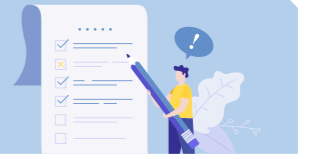
자가격리 조치의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신고민원 등 각종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상호 협조적인 조직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격리로 인한 소통부재로 단절될수도 있는 민원이었지만 직원 개개인이 담당업무를 떠나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로 진정성있는 업무처리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직원들이 격리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재자로서 시와 구·군, 부서 상호간에 업무협의를 돕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여준 일련의 노력은 납세자보호관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부 납세에 저항하던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좋은 방향으로의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수상
01

소금 압류 해제는 절대로 불가능한가?



자치단체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당자 정진욱

사실 관계

1. 민원인 김00(여, 35세)은 2011.6.27. 주민세(양도소득) 3,840,050(가산금 포함)원 체납으로 영도구(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로부터 구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예금을 채권 압류 당하였다. 압류 당시 예금 잔액은 7,331,468원으로 예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당한 압류였으나, 중부산세무서에서 36,797,820원 선순위 압류가 있었다.
2. 2011.8.31. 선순위압류권자인 중부산세무서에서 예금 잔액 전액을 추심하여 예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이후 2011.9.25. 예금이자 1,135원이 입금되었다.
3. 처분청에서는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2021.6.)까지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민원인 앞으로 납부할 세금 5,741,050원(가산금 포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원 내용

민원인은 2007년 부모를 여의고, 외할아버지(황00-부산 영도구 봉래동 거주) 밑에서 지내던 중 상속으로 받은 부모님 소유 부동산(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을 2008년 정리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당시 22세의 어린 나이로 세금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양도소득)를 알지 못하여 납부를 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고, 결국 이 세금은 체납이 되었다.

2021년 6월 민원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관련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신청했다가 해당 체납 사실을 알게 되어 영도구 세무과로 연락해 체납금액과 예금 압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매달 60만원씩 분납을 약속하는 등 납부의사를 보였으나 압류해제 및 납세증명서 발급은 완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했다.

답답한 마음에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의 존재 등을 알게 되어 중부산세무서의 추심시점에서 압류의 효력 상실 등을 사유로 그 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세무과에 요청하였으나, 세무과에 선 압류할 당시 압류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잔액(1,135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급하여 압류 해제는 해줄 수 없고, 대신 현재 시점에서 실익 없음 사유로 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납세증명서 제출이 시급한 민원인은 마지막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소급압류해제와 본인 체납의 소멸시효 완성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추진 내용

1. 사실확인

2021.6.21.(월)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 받고 즉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세무과에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민원인의 사정이 급하다고 느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정리팀장님께 면담을 신청했다. 면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듣고, 세무과에선 민원인의 체납이 가산금 포함 5,741,050 원인 고액이고, 소급 압류 해제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채 돌아왔다.

2. 판례 등 사례 검토

민원인 입장에선 부과사실을 모른 채 해외로 나갔고, 이후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체납과 압류가 진행되고 가산금 등이 붙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판례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 1)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이트에서 압류의 효력은 압류 대상인 재산(채권 등)이 존재하여야 처분(추심)이 가능하므로, 추심할 대상이 되는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고, 시효 중단의 기준일자는 압류해제 원인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 2) 조심 2018지1378(2018.11.20.) 우리 구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서의 추심으로 잔액없음을 확인하고는, 그 시점으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3) 대법원 2016다239840(2017.4.28.)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 종합적인 판단

2021.6.24.(목) 위 사례 등을 취합하여 세무과 채권 압류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우선위채권자인 중부산세무서의 추심으로 통장의 잔고가 0원이 된 때부터 채권 압류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어 체납처분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시효도 그 때부터 새로이 진행되며 이를 이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한 사례 또한 있음을 확인해 드리며, 민원인의 청구를 수용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4. 최종 결과

2021.6.25.(금) 세무과에서 해당 요구를 수용하여, 중부산세무서에서 예금을 추심한 2011.8.31.의 다음 날인 2011.9.1.자로 소급하여 예금 압류를 해제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민원인에게 해당 처리 사실을 통보했다.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압류가 소급하여 해제됨에 따라 소멸시효 또한 2011.9.1.부터 다시 진행되어 2016.8.31.부로 민원인의 체납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5,741,050원은 전액 감액처리 되었고,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한지 5일 만에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무사히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타국에서 힘들게 살아온 민원인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 주어 모국에서 자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주었고, 이 경험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이후 성실납세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우수상

02

소멸시효 중단된 체납의 짐을 내려주다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자 김창일

추진 배경

급여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고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온 A씨는 사업이 잘 나가던 1999년에 노후를 위해 구입했던 제주도 땅 한 필지가 평생의 짐이 될 줄 몰랐다고 하소연을 했다. A씨는 경기도 부천 소재 청소대행업체에서 200여 만원의 급여를 받고 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601만원 인 제주도 소재 토지에 압류된 체납액은 2억원이 넘었다.

A씨는 2006년 사업이 부도가 나서 청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체납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으나, 그때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의 체납이 A씨의 제주도 토지에 압류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였다. A씨는 부동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압류로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포기한 상태인데, 부동산을 압류한 각 관청은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시효만 중단시키고 있었다.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온 A씨는“부동산을 압류한 각 관청에서 공매 진행하지 않고 압류 만 유지하게 되면 체납액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느냐?”“파산신청을 알아보고 있는 경제상황 인데도 부동산을 소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을 하였다.

사실 관계

1. 민원인 인적사항

- 체납자: 최○자, 체납세액: 3,435,660원
- 압류부동산: 제주도 서귀포시 00동 임야 4,456㎡ 중 891.2㎡
- 부동산 공시가격: 6,015,600원

2. 민원 요지

A씨는 1999. 3.13.에 제주도 소재 토지를 취득 하였는데, 2006년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자 각종 체납금액 이 이 토지에 압류되기 시작했다. 2007.11. 1. OOOOOO공사에서 1.36억원을 가압류 하였고, 2011. 6. 7. XXX세무서 압류 한 이후 8개 기관에서 2억 여원의 체납금을 압류하고 있어 A씨는 제주도 토지에 대하여 재산가치를 포기한 상태였다.

영등포구청에서는 2012. 1.31. (주)OO화학의 과점주주[A씨 35.5%, A씨 배우자 45%]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A씨에게 (주)OO화학의 체납 세액 중 3,435,66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후, A씨

가 (주)OO화학의 체납세액 3,435,66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3.10.25. A씨 소유의 제주도 토지를 압류 하였으나 최선순위 가압류 1.36억원과 7개 기관의 선압류 등기로 매각·환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었음. 토지에 압류된 체납금액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고 청소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파산신청을 알아보고 있는 형편인데도 부동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못하게 되자,

A씨는 최선순위를 압류기관 인 XXX세무서에 찾아가“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체납세금을 받아가고 남은 체납은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해 달라.”고 요청 했으나 XXX세무서의 담당자는 “선순위 가압류가 있어서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을 찾은 A씨는“2006년에 부도가 나서 사업을 접었는데 그때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이 15년 이 지난 지금까지 저를 움아메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시효가 있다는데 청소 일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데 체납 세금은 시효가 없나요? 토지에 압류된 2억원의 체납세액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다.

추진 사항

1. A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 사실

- 1999. 3.13. A씨 해당부동산 취득
- 2007.11. 1. ◇◇수출보험공사 1.36억원 가압류
- 2011. 6. 7. XXX세무서 압류
- 2011. 9. 7.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 2011.11. 8. ★★시청 세무과 압류
- 2012. 5. 2. ◆◆세무서 압류
- 2012. 6.18. □□시청 징수과 압류
- 2012.11.28. △△△ △△구청 세무과 압류
- 2013. 7.23. ▽▽▽시청 세무과 압류
- 2013.10.28. 영등포구청 세무과 압류

* 해당부동산의 공시가격은 6,015,600원(2021년 현재 공시지가 6,750원/㎡)

2. 착안사항

납세자보호관은 15년 전에 발생한 체납액이 압류되어 시효 만 중단시키고 매각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라고 판단하고 A씨의 압류된 토지를 공매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씨의 토지를 매각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문제가 풀려야 했다.

첫 번째는 2007.11.1. 등기된 1.36억원의 가압류 등기였고, 두 번째는 영등포구청 압류에 앞서서 등기된 7개 기관의 압류 였다.

가압류 등기 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 등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A씨 부동산에 대한 OOOOOO공사 1.36억원의 가압류는 채권효력이 상실 되었음에도 말소 등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에 가압류 채권자 OOOOOO공사에 확인하였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납세자보호관이 000000공사 00관리팀 000과장에게 000000공사의 A씨에 대한 채권 1.36억원을 확인한 바, 000000공사의 A씨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 되었으나 가압류 등기 만 말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 사실관계 확인

(1) A씨 취득(1999.3.17.)

3 (전 6)	전3번 지분445	1999년3월17일	1999년3월13일	공유자 지분 4456분의 891.2
	6분의2673.6중일부(4456분의891.2)이전	제9747호	매매	서울 은평구
3-1	3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2021년6월8일	2010년11월16일	의 주소 도 시 로 (동)
		제29266호	주소변경	

(2) 000000공사 가압류(2007.11.1.)

12	3번 지분가압 류	2007년11월1일	2007년10월30일	청구금액 금136,000,000원
	계 호	서울중앙지방법 원의 가압류 결정(2007카단)	채권자 한국 공사 110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부)

3. 압류재산 매각을 위한 납세담보 설정 등기 후 매각

000000공사의 A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채권이 결손 처리 되었음을 확인한 후, 납세자보호관은 A씨와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차 협의하여 영등포구청에 앞서서 등기된 7개 기관의 압류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규정에 따라 공매 하기로 하였다.

※ 지방세기본법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담보 등기 설정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A씨의 부동산에 납세담보 설정 등기 후에 매각 하기 위해 2021.6월 A씨와 협의하여 납세담보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함.

추진절차



4. 추진 결과

- 2021. 6. 8. A씨의 동의를 받아 납세담보설정 등기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갑구3번 지분 전부근저당권설정	2021년6월8일	2021년6월3일 납세담보제공계 약	채권최고액 금3,435,660원 채무자 도 시 로 (동) 근저당권자 서울특별시 관리청 영등포구

- 2021. 6.1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의뢰
- 2021.12.15. 제1차 매각 마감 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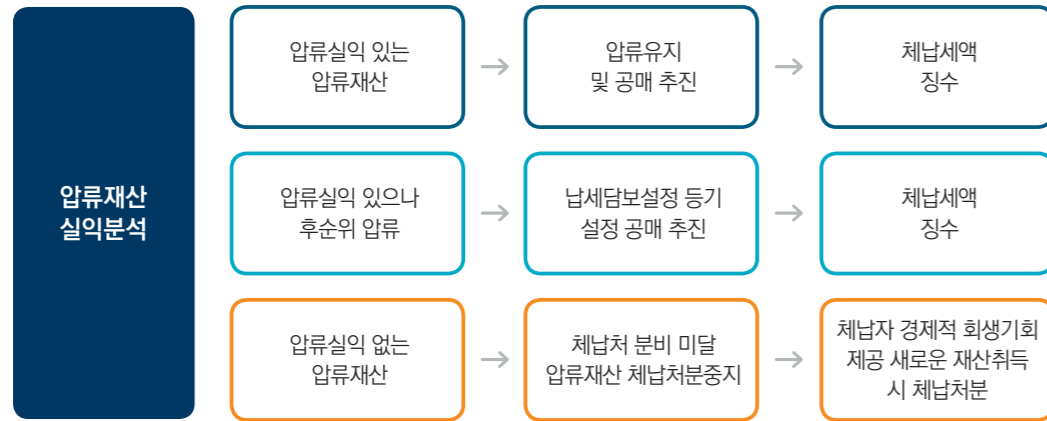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A씨의 제주도 소재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진행하고 있으며, 매각대금에서 압류된 체납금액이 배당 된 후, 남은 체납액은 A씨에게 5년간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 될 예정이다.

조세 징수 기관에서 압류실익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유지하게 되면, A씨처럼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시효가 중단된 체납액이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 될 수 있으나, 영등포구청에서는 후순위로 압류한 재산을 납세담보 설정 후 매각하여 체납세액을 징수 할 수 있었고, A씨 에게는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 하였다.

체납자 재산 압류는 과세관청 조세채권의 징수를 담보하고 고의, 악성 체납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세징수 활동이나, 과세관청에서 압류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유지하고 매각 또는 환가 하지 않게 되면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영세체납자를 체납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기에 압류 실익이 없으나,

재산 매각 등이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압류재산은 영세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압류 실익 분석하여 체납처분 중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편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01
고충민원
처리

02
적극행정

홍보추진
& 찾아가는
서비스



01 고충민원처리

02 적극행정

03 홍보 & 찾아가는 서비스

01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고충민원처리

제주 서귀포시 영세체납자의 계좌압류 해제로 경제적 회생 지원	41
경남 창원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46
전남 장흥군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추징 규정의 적극적 해석	49
서울 은평구 '고질민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52
광주 광산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즐거움도 잠시, 가산세라니!!	55
경남 김해시 엄마의 마음으로 가산세 벽을 부수다	57
경북 청도군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부과 고충민원	70
광주 동구 부재중 부과된 주민세 취소	64

사례 01

영세체납자의 계좌압류 해제로 경제적 회생 지원



자치단체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담당자 조혜정

민원 배경

민원인은 2013년경 세무조사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4년경 서귀포시 세무부서로부터 지방소득세 3백만 원 납부고지를 받았다.

납부 능력이 없던 민원인은 위 지방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서귀포시 세무부서는 2015. 2. 23. 금융기관 3 곳에 계좌 압류를 실시하였다.

이후 6년이 지난 2021. 3월경 민원인은 체납하던 국세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체납된 지방소득세의 시효완성여부를 확인하고자 용기를 내어 제주특별자치도 세무부서*에 연락하였다.

* 3백만 원 이상 체납은 제주특별자치도 세무부서로 이관

그러나, 민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세무부서로부터 “이미 2015. 2월경 금융기관 3곳에 계좌압류를 하면서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후 2019년도에 압류해지를 하였으나 여전히 소멸시효가 3~4년 남아있으므로, 지방소득세 3백만 원을 납부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민원인은 금융기관 3곳(국민, 우리, 신한은행)에 개설한 계좌가 없었고, 혹시나 해서 위 금융기관에 모두 연락했는데도 민원인 명의로 압류된 계좌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2021. 3. 31.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본인의 체납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기를 희망하였다.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고충민원 접수 및 신청서 작성 곤란

2021. 3. 31. 민원인은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민원인은 제주도 외에 거주하여 직접 방문*이 불가하고, 컴퓨터로 신청서 작성도 어려운 상황이라 우편·팩스 접수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민원인은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지만, 당시 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전화 신청만으로 고충 민원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고충민원서류의접수)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구술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민원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수 없어 매번 전화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세무부서에서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 감사, 본인확인)를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고충 민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안은 전화 신청만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다행히 세무부서도 민원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서 요건 완화에 동의하였다.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금융기관 공개거부

2021. 4. 2. 납세자보호관은 서귀포시 세무부서에 세금부과 및 압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독촉장, 재산압류조서, 예금잔액증명서 등)를 실시하였고, 2021. 4. 6. 서귀포시 세무부서는 각 금융기관에 민원인의 거래정보를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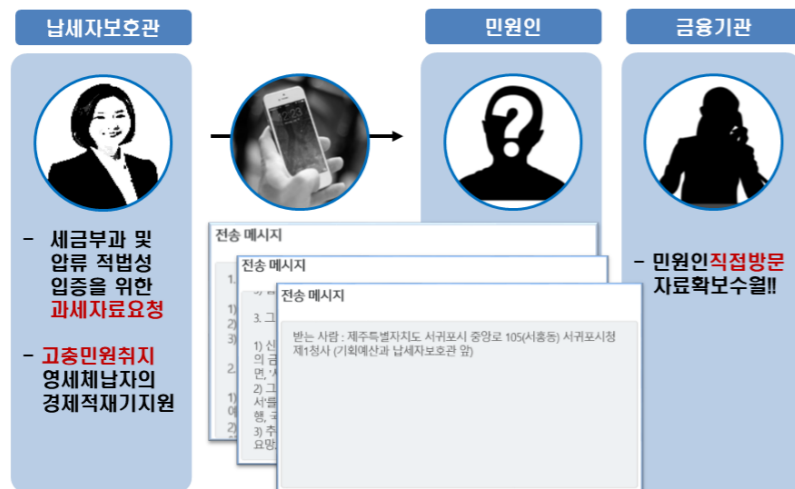
그런데, 모든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법상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본인동의서, 신분증 사본, 공무원 신분증 사본 등을 보완 요청하였고,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서식 작성에 미숙하고 직접 방문도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서류를 구비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권익 구제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금융기관 본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본 고충 민원의 취지가 영세 체납자의 압류를 해제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도 그 취지에 공감하며 서귀포시 세무부서가 기실시한 금융거래정보요청 대신 민원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2021. 4. 13.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직접 금융기관(국민, 신한,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고, 민원인 역시 신속한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전문적인 금융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선뜻 금융기관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이에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관련 절차를 문자로 안내하면서,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담당자가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행정번호를 남겨 즉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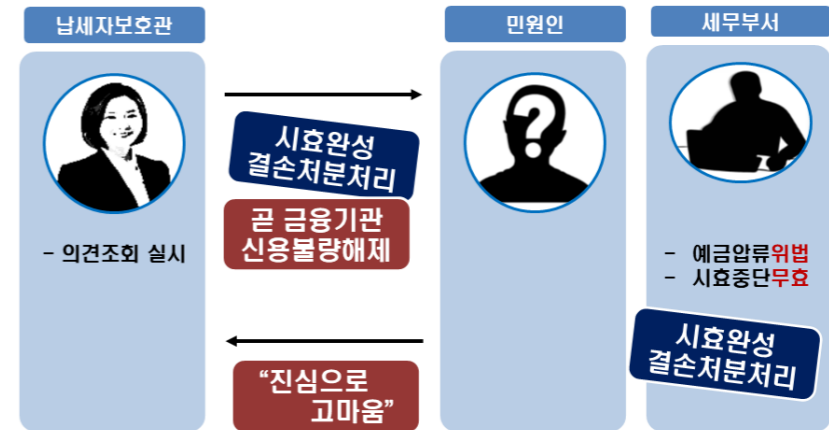
2021. 4. 14. 민원인은 용기를 내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어 금융기관 지점 담당자와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이 몇차례 통화하기는 하였지만, 본 고충 민원 해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였고, 2021. 4. 19. 민원인은 위 서류를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에게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고객중합정보조회표: 예금압류 시점에 금융기관 3곳에 민원인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음

3. 의견조회 및 결손처리

2021. 4. 20.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위 자료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세무부서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2021. 4. 21. 제주특별자치도 세무부서는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예금압류의 위법성(지방세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달 기록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2015년 압류 당시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음) 및 소멸시효완성(무효인 압류에 기한 시효중단 역시 무효)을 인정하였고, 2021. 4. 23. 서귀포시 세무부서는 민원인의 체납을 시효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리하였다.



2021. 4. 23.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에게 위 처리 결과를 알리며 조만간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불량을 해소할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민원인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자, 서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추진 사항

1. 영세체납자의 압류 해제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

현재 세무부서는 지방세전산시스템을 통해 제1금융기관의 계좌를 압류하고 있지만, 그 시스템상에는 체납자의 잔액조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체납액 범위를 초과한 과다 압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세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현황을 파악하여 실익 없는 압류 해제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실제로 서귀포시 세무부서는 본 고충 민원을 계기로 2021년 6월부터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압류·추심을 하여 실익 없는 압류 해제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 스마트폰을 이용한 쉽고 간단한 고충민원접수 실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면 작성을 통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고충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 접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익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례

02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자치단체명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자 김미란

사실 관계

민원인은 창원시 북면 소재 토지를 2003년 취득하고 현재까지 창원중장비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재산세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원인은 구청 재산세 담당자가 부과될 재산세 과세대장에 별도합산으로 부과되던 민원인의 토지를 종합합산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민원인은 몇차례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지만 담당자는 복잡한내용을 이야기했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민원인은 나라법이 맞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자금 유통이 힘들어졌고 갑자기 부과되지 않던 종합부동산세가 1600만원이 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원인의 정신적, 물적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종업원(교육강사)의 급여를 줄이고 카드로 장기 할부를 하면서 버텨 나갔지만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납세자보호관에게 징수유예와 고충민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추진 내용

1. 사전검토

납세자보호관은 중장비운전학원(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민원인의 사업용 토지가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일반 자동차 학원과 달리 종합합산 과세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관련법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2. 구청의견 청취

부과부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였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바닥면적은 별도합산이 되고 그 외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이 된다.

이 규정만을 두고 보면 부과는 정당한 보인다. 구청 담당자는 법에 나와있는 대로 과세했을 뿐이라고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3. 현장 확인

납세자보호관은 창원중장비운전학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언뜻 보기에도 대지면적에 비해 적어 보이는 교육용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 건물 74㎡가 있었다. 하지만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는 주행도로, 운행코스 등의 토지와 분리될수 없는 정착물들이 있었고 신호등과 같은 공작물, 시험에 쓰이는 건설기계를 정차해 놓은 주기장이 있어 실습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짐작케 했다.



4. 쟁점 사항

1) 쟁점토지는 일반 자동차 운전학원(면허시험장) 과 뭐가 다른가?

- 건물이 대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업종으로 지상에 정착물을 가지고 있는점, 실제 운전 교습 및 면허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동차 운전면허학원과 시설은 거의 동일하나,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하는 반면, 중장비운전면허학원은 학원의 일종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교습학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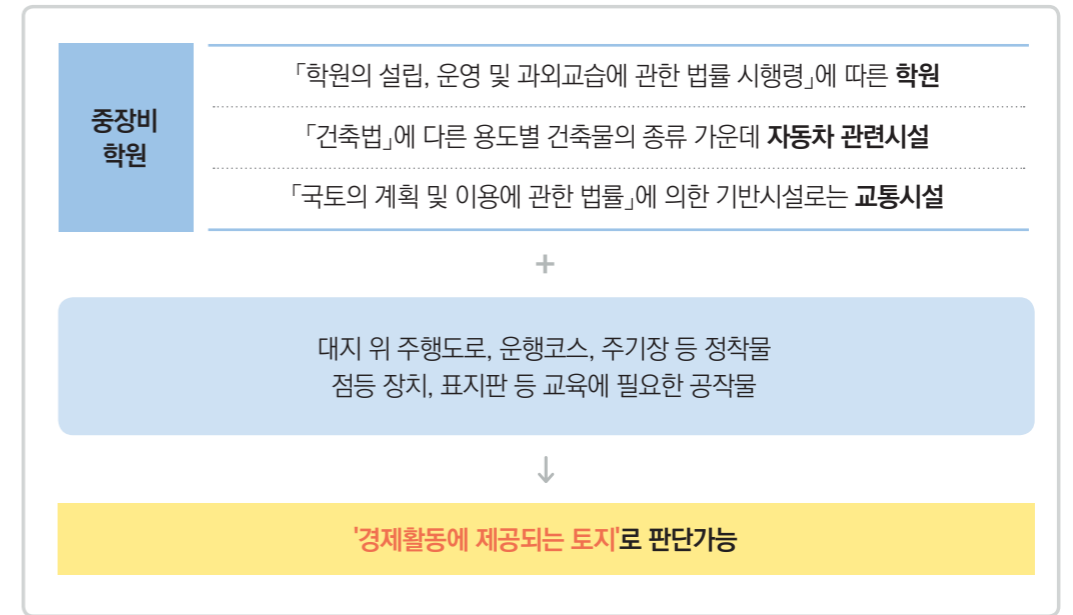
그리고, 지방세법에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중장비운전면허학원에 대해서 별도 합산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의 입법취지와 비교했을 때 종합합산이 과연 타당한가?

- 구청에서 부과시 참고했던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모든 토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될수 있을까?

이 규정은 나대지위에 건물이 있긴 한데 그 시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 거의 나대지와 같아서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별도합산으로 하고 기타면적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하겠다는 징벌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모든 토지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5. 종합적인 판단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별도합산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와 해당 지상 정착물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중장비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학원의 일종이며 일반 자동차 학원과 똑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 관련시설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로 분류된다.

게다가, 현황상 지상에 주행도로, 운행코스, 주기장등의 정착물이 존재하며 점등장치, 표지판 등 공작물도 존재하므로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인 별도합산으로 봐야 한다.

시사점

지방세법의 용어나 규정은 일반 납세자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렵고 생소하다. 법 규정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은 부과가 정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납부해 버리곤 한다. 부과부서에서 정확한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선량한 납세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사례를 통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이해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무궁무진하다고 느꼈다.

사례 03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추정 규정의 적극적 해석



자치단체명 전라남도 장흥군 담당자 조기우

사실 관계

민원인(김OO)은 2019.11.20. 장흥군 OO읍 소재 농지(답, 2,2027.3㎡)를 매매를 원인으로 39,8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16,400원을 경감 받고, 취득세 636,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장흥군은 2021.3월 자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제' 지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취득자가 아닌 기존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2021.4.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취득세 810,170원을 과세예고 후 부과 지하였다.

민원 내용

1. 민원인 인적사항

- 성명 : 김OO(취득자, 농가경영주의 처), 김OO(농가 경영주)
- 물건지 : 전라남도 장흥군 OO읍 OO리 000-0번지(답, 2,2027.3㎡)

2. 민원요지

민원인은 위 농지는 기존 경작자가 매도 후 계속 경작하고 있으므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농지를 구입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간암에 투병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2020년에 농사일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당초 신고 내용대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는 동법 제1항 제1호 단서의 추징 배제 사유인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해결 과정

1. 추진과정

민원인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2020년에 국한되며, 이후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웃 주민과의 면담, 농업직불금 지급대장(2020년) 및 신청대장(2021년) 등을 통해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민원인은 해당 사안이 지특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조세심판원 결정, 행안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적용 법조의 당부를 검토하였다. 이에 더하여 남편의 간암 투병이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였다.

2. 해결과정 및 판단

해당 마을 이웃 주민과의 면담 및 농업직불금 대장 등을 통해 민원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구분	내역
2020년 직불금 지급내역	
2021년 직불금 신청내역	

조세심판원은 유사 사례에서 심판결정례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의 질병 진단 및 수술 등의 사유 등 소유자의 내부적인 사유는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6지0868(20161212)고 판단한 바, 민원인의 남편 간암 투병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지특법 각 항 각 호의 적용에 있어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이 기존 경작자가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 아닌 제1호가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예기간(2년)이 남은 상태에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이 있다(조심 2015지0868(20161212)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심판례 등을 통해 장흥군의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 내용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민원인은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감사함을 표하였다.

시사점

인구 4만의 농어촌 고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위상 정립과 그 효율적 운영에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영세 농어민 입장에서 높은 법무 및 세무사 문턱을 고려하면, 연간 단 1명의 납세자라 할지라도 그 고충을 듣고, 같이 고민하고, 적극행정으로 사안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납세자보호관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사례 04

'고질민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당자 이수미

사실 관계

민원인 이○○(82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거주)은평구 ◆◆동 토지 △△△-△ 1,767㎡, ▲▲▲-▲▲▲ 132㎡를 2003. 4. 22. 증여로 취득,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재산세 16,443,050원을 납부하였다.

민원인은 소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데도 주변 토지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까지 감당하기 너무 벅차, 수차례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자들은 부과에는 문제가 없으며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지 않는 한 세금은 조정될 수 없으니 지적과에 가서 이의신청하시라”말만 되풀이 했고, 지적과에서도 공시된 지가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고질적인 민원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고령자인 민원인은 심적 고통이 심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우연히 집 우편함에 있던 납세자보호관 포스터를 보고서 도움을 요청,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 부과된 세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2021. 5. 14.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해결 내용

처음 민원을 접하고 토지의 공부상 이용 상황을 확인해보니 ◆◆동 ▲▲▲-▲▲▲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였으나 민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동 △△△-△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었다.

2020년 재산세 부과내역을 살펴보니 양 필지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동 ▲▲▲-▲▲▲은 임야인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이유를 확인해 보니, 취득시기로 인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 이었고 재산세액 산출과정에는 위법한 사항이 전혀 없어 세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였다.

[2020년도 재산세 부과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	공시지가 (원)	공정시장 가액비율 (%)	과세표준액(원)	세율 (종합합산)	세액 (원/지방세포함)
◆◆동 △△△-△	대지	1,767	540,600	70	668,668,140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5	3,900,880
◆◆동 ▲▲▲-▲▲▲	임야	132	340,700	70	31,480,680		

현장을 확인하니 ◆◆동 △△△-△는 ◆◆동 ▲▲▲-▲▲를 포함 인접한 형태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거대한 임야의 한 부분 끝자락으로, 사권이 제한된 관계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나무와 풀이 자라나고 있었고, 일부는 인근 주민들이 배추, 상추 등을 재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지보다는 임야에 가까웠다.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니, 양 필지가 실질적으로 주변과 같은 임야라고 볼 수 있는 데도 인근 8개 토지의 2020년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30,150원인데 비해, ◆◆동 △△△-△, ▲▲▲-▲▲의 개별공시지가는 각각 540,000원, 340,700원이었다.

주변 토지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어 지가부서에 방문, 어떤 경로로 공시지가가 산정되었는지 전산관리대장을 살펴보니 지가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 선택에 있어서 주변 토지는 “임야”를 사용한 것과 달리 이건은 “대지”인 표준지를 선택하였고 토지의 특성을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용 현황인 전(田) 등을 적용 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동 △△△-△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것을 감안한다면 표준지 선택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2020년도 공시지가 내역]

소재지	지목	현황	면적 (㎡)	표준지	2021년 공시지가(원)	도면	현장사진
◆◆동 △△△-△	대지	전/임야	1,767	대지 표준지	540,600		
◆◆동 ▲▲▲-▲▲	임야	전	132	상동	340,700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가부서에서와 같이 세무부서에서도 민원인 소유 토지의 현황을 저울의 분리과세대상인 “전”으로 인정하여 재산세를 부과 하는 것이지만,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변경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결과는 확신할 수 없었다.

지가부서 담당자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고, 세무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목적으로, 세무부서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현황과세 원칙에 근거 민원인의 토지를 “전”으로 부과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공식적으로 불가의 화신을 받았다.

지가부서 담당자에게 민원사항을 언급하니, 항상 오시는 민원이라 잘 알고 있으며 산정된 지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민원인 소유 토지의 특성이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주변의 임야와 다를 바 없는데 주변에 비해 지나치게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니 현장을 확인하여 지가 산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다.

또한 동일한 조건인 토지에 대해 한 구청 양부서간의 처리방식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피해사항을 적극 어필하고, 고령자인 민원인을 대신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서 이건에 대한 세무부서의 공식 문서를 전달하고 세무부에서는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으니 민원인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처리해 달라고 재차 담당자에게 호소하였다.

얼마 후 지가부서 담당자로부터 이의신청 처리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만큼 공시지가가 조정되었고, 조정결과는 2021. 7. 30.일자로 공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주요성과 및 시사점

2021. 7. 30. 토지 ◆◆동 △△△-△의 개별공시지가가 조정 공시되면서,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금년도 재산세 금액이 4,317,030원에서 2,958,920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나, 납세자보호관의 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령인인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사실이 무척 기뻐다.

[2020년도 공시지가 내역재산세 부과취소 결정액 : 1,358,110원]

소재지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2021.7.30.)			2021년 재산세 조정(◆◆동 ▲▲▲-▲▲포함)		
	공시기준일	당초가격 (원/㎡)	조정가격 (원/㎡)	당초세액	조정세액	부과취소액
◆◆동 △△△-△	2021.1.1.	594,000	411,000	4,317,030	2,958,920	1,358,110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고질민원을 납세자보호관이 적극 개입하여 담당 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민원사항을 해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실현한 것이다.

사실 이 민원은 고질민원이라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세무부에서나 지가부서에서도 위법한 사항이 없어 결과를 확신할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납세자보호관포스터를 보고 하느님이 살길을 열어 주신 거 같아 기뻐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민원인의 말이었다.

고질민원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굵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입견을 버리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은 생각했던 것 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납세자보호관이 노력한 결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노력 하나 하나가 납세자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라는 것을 믿는다.

사례
05

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즐거움도 잠시, 가산세라니!!



자치단체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담당자 박홍수

민원발생 배경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은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이를 국민들이 모두 알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일어난 사실로 당시의 조세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면서도 위반한 사례는 아니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민원 내용

민원인은 2020.05.25. 아파트를 유상취득하면서 취득신고와 등기관련 업무 일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주택을 취득했는데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취득신고를 인터넷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민원인이 30세 미만으로 부모세대를 포함하면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추징했다.

민원인은 신고한 뒤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려주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감사관실과 납세자보호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추진 내용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여러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다. 2020.1.에도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서울변동구간에서 문턱효과가 발생하고 주택소유 격차로 서민 주택난이 가중되고 조세형평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거래금액에 따라 세율을 세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지만 납세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세법을 모두 인지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대부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납세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세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했다더라면 신고 당시 다주택에 대한 세율 등을 안내받았을 것인데 전문가에게 위임했음

에도 발생한 민원으로, 세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취득신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다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과소신고된 납세자에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민원의 경우에는 안내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의나 과실, 착오에 의한 무신고나 과소신고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불성실 신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정당한 처분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더불어 각종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은 혼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고 후 다주택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안내를 받지 못하여 안내를 받고 기간 내에 신고한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납세자보호관 설치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가산세 제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가산세는 원래는 징수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세정임을 고려할 때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모두를 감면해주는 것은 조세법의 근간을 무시한 판단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를 설득하여 납부하도록 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에 권고한 결과 수용하여 감면처리 했다.

시사점

세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조차도 세법에 대해 그 해석을 포기할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여 납세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납세자보호관이 세법에 얽매어 법대로 해석한다면 그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해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사례
06

엄마의 마음으로 가산세 벽을 부수다



자치단체명 경상남도 김해시 담당자 서수진

📁 사실 관계

세무과에서 2021년 2월 납세자 A에게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04,170원을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2021년 3월말 납부기한으로 공시송달하였고, 4월에 발송된 독촉장 수령하여 세무과에 가산세 부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산세 조정 요청하였으나, 국세 조정없이 세액조정 불가함을 사유로 조정 거부하여 독촉장 뒷면의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를 보고 상담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 추진 내용

- 체납자 A는 귀촌을 목적으로 2016.7.27. B와 공동명의로 경북 영주시 소재 전 2,661㎡를 취득하였고, 2020.7.1. 자녀 C가 암진단을 받아 투병생활 시작하면서 귀촌계획을 포기, 공동명의로 B에게 부동산 매도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여 2020.7.30. 부동산 양도시 모든 법적 신고 의무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었으며, 2021.1.20. C 사망 후 2021.4.9. 독촉장 수령할 때까지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무지에 의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가산세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 사실상 A와 장시간 통화하면서 상담을 해드렸다기보다는 그간의 힘들었던 과정을 눈물로 호소하는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에 가까웠고, 그 과정에서 나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납세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공감하게 되어 가산세 감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바, 가산세 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산세 감면 신청 제도에 대해 안내함과 동시에 신청없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확인하여 연락드리기로 하였다.
- 우선, 체납자 A의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 의거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 중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종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를 감면신청서 접수 전 사전검토해 보도록 세무과에 요청하였으나, 위 법을 적용하여 가산세 감면 적용한 전례가 없고, 양도소득세 조정없는 세액조정은 불가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참고법령

- 「지방세기본법」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제26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종인 경우

(이하 생략)

- 이에 지방세 과표조정을 위해 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자와 통화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의거 감면 적용을 검토 요청하였으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음을 들어 불가 통보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A에게 알리면서 지방세는 가산세 감면 신청서 제출을 통해 절차 진행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 가산세 감면 신청 및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거치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 이후 2021.4.15. 우리 부서를 방문한 A는 재차 눈물로 호소하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세무과는 신청인의 자녀가 장기간 투병 사망한 사실이 기한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가산세 감면을 계속 거부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가 동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분리 해석해야 함을 설명, 즉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 적용을 권고할 것임을 예고하고 절차 진행하던 중 신청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 신청이 받아들여져 1,148,332원 감액 결정결정하였음을 세무과로 통보하였고, 과표경정을 사유로 지방소득세 111,370원을 감액 처리하였다.

《국세청 통보자료》

양도소득세 통보자료 상세내역(F_LPIT_558_S02)										
2	자치단체	귀속년도	통보년월	양도일자	양도자산내역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신고구분
1	48250 경상 2020	202104	2020-07-30	경상북도 영주시		24,161,600	2.5	496,040	-1148332	24 경정결정
2	48250 경상 2020	202102	2020-07-30	경상북도 영주시		24,161,600	2.5	496,040	61087023	예정결정

납세자		신고/결정 번호		세율구분코드		양도소득금		기산금	
납세자구분	국내외	신고/결정 번호	2020012	세율구분코드	1-11:일반세율(0.6-4.0%)에 100분의 10 더한세율	양도소득금	26,661,600	기산금	0
양도자산종류	21:부동산동거자료	신고구분	24:경정결정						
양도자산내역	경상북도 영주시								
양도일자	2020-07-30	양도소득금액	26,661,600						
신고일자	2021-04-15	기산고 소득금액	0						
경정년월	2021-04	소득감면대상	0						
최종양정지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구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4,161,600	0
세율	25	0
산출세액	4,960,400	0
감면세액	0	0
외국납부세액공제	0	0
원천징수세액공제	0	0
신고불성실가산세	0	0
납부불성실가산세	0	0
기장불성실가산세	0	0
전자신고세액공제	0	0
납부할세액	-1,148,332	0
자진납부세액	0	0
기결정세액	6,108,732	0
결정세액	4,960,400	0
총결정세액	4,960,400	0
기납부(환보)세액	0	0
통보세액	0	0

세율구분코드	1-11:일반세율(0.6-4.0%)에 100분의 10 더한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0
양도소득금액	26,661,600	납부불성실가산세	0
기산고양도소득금액	0	기장불성실가산세	0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0	기신고,결정,경정 세액	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0
과세표준	24,161,600	납부할 세액	-1,148,332
세율	25	납부세액	0
산출세액	4,960,400	환급세액	0
감면세액	0	당해자산 자진납부세액	0
외국납부세액공제	0	기결정,기고지 세액	6,108,732
원천징수세액공제	0	결정세액	4,960,400
		총 결정세액	4,960,400

주요 성과

정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가산세 감면 적용을 축소·거부해 오던 부과부서의 업무관행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납세자보호관으로서가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납세자의 고충에 공감함으로써 지방세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권한 밖에 있는 국세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절차까지도 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감행정을 구현할 수 있었다.

사례 07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부과 고충민원



자치단체명 경상북도 청도군 담당자 김병욱

추진현황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취득세 과다부과 고충민원

민원인은 청도군 금천면 소재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 20여년 전에 건축한 차고 건축물이 최근 불법건축물(150.55㎡)로 신고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상기 건축물은 2020.10.16. 경량철골조 차고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취득세 2,392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차례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오게 된 사례가 되겠다.

추진 내용

현장에 답이 있다.

먼저 건축물대장 및 취득세 자진신고 자료를 검토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담당자와 함께 현장 출장하여 민원인을 만나 고충민원에 대하여 상담 및 건축물 구조 등 현황을 확인하여 취득세 과세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다.

건축물 구조는 철파이프와 구분이 애매한 것이 건축물대장상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어 건축부서에 확인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모텔 현장 사진

실제 현장에 와보니, 건축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있어 내가 민원인 입장이라도 세금이 너무 많아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방세법전을 펼쳐게 되었다.

아는 것 만큼 보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6항에 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에 있어 취득의 시기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인 것이다.

이때 예전에 시골집에서 보았던 대들보위에 있던 상량문(上樑文)이 생각났다.



상량문(上樑文)

집을 짓거나
고친내력, 날짜, 축문 등을
적은 글

집을 짓거나 고친내력, 날짜, 축문 등을 적은 글로써 취득세 과세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고 건축물에는 상량문(上樑文)이 있을 리 만무하다.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을 거듭하다 번뜩이는 아이디어(idea)가 떠올랐다. 바로 “위성사진” 이었다.

관련 법 세부 검토하다.

민원인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부와 등의 원칙을 보면, 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②신의성실의 원칙 ③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 ④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해석의 기준이 있다.

특히,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규정과 관련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기간 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라는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어 권리관계를 확정·안정시키고 있다.

이상으로 관련법을 검토하면서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적용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요 성과

취득의 시기 판단에 위성사진 활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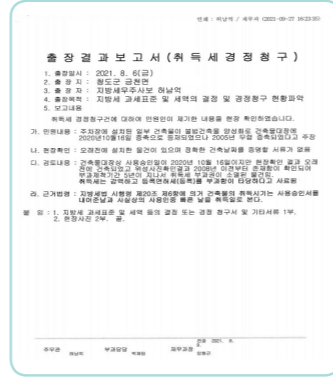
현재와 2008년도의 위성사진을 비교하였을 때 건축물 현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것으로 민원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적용하는 것이 우리 청도군에서는 처음 적용하는 사례가 되다보니 법 적용이 타당하지 망설여지기도 하였다.

적극행정 추진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공평과세의 취지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부과제적기간(5년)을 적용하여 취득세 2,392천원 전액감액 및 환급처리하고, 등록면허세(등록) 105천원, 재산세(5년) 213천원을 과세하여 속 시원하게 고충민원을 해결하게 되었다.



기대효과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以聽得心)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가끔 고질민원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청득심(以聽得心)의 마음으로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한다.

위성사진을 접목하여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의 시기로 판단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의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며

민원해결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납세자보호관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고 그 위상 또한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납세자보호관의 마음가짐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 08

부재중 부과된 주민세 취소



자치단체명 광주광역시 동구 담당자 최익준

사실관계

국세청은 2002년 12월 3일 민원인에 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국세) 34,998,651원을 광주광역시 동구 세무부서(이하 '세무부서')에 결정·고지하였고, 세무부서는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제2항에 따라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주민세 3,499,860원을 2002년 12월 수시분으로 부과했다.

민원인이 위 본 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되어 관리하던중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제6조 3항 2호에 따라 2008년 3월 20일 가산금을 포함한 6,152,260원을 시로 이관했다.

민원내용

1. 민원인 인적사항

- 성 명 : 박○○ (53세)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 ○○○호(학동)

2. 민원요지

민원인은 광주세무서에서 민원인에게 정확한 세목이 무엇인지도 통보한 바 없고 부과 고지서를 누구에게 송달한 것인지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없고,

1999년부터 2003년 11월 3일 까지 8건의 광주지방검찰청 수배와 회사의 부도로 채권자들로 인해 2011년까지 광주 동구 증심천로 ○○○, ○○○호 아파트를 비웠는 바,

민원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하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했다.

추진 내용

1. 쟁점사항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서류 보존연한(10년)을 경과하여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고지서가 신청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민원인 부재중(교도소 수감) 주민세 부과 타당하지 여부

2. 세무부서의 의견

지방세법제51조(서류의 송달) ①항에 따르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하였고, 또한 같은 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항에 따라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나와 있으며,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본세 기준 30만원이 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 2002년 12월 수시분으로 부과한 본 건 주민세는 서류보존연한(10년)이 경과하였고 2006년 지방세 프로그램 교체로 인해 우편 송달내역을 확인 불가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라 등기송달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또한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을지라도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할 가능성도 있었다. 대법원 2007두24203(2008.01.31.) 판결을 보면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는 발송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당해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납세고지가 1994. 7. 31.자로 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06. 9. 2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그 송달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한 바가 있고, 또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2611 판결에서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 기간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부서의 본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현존하는 송달자료가 없더라도 본 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부서에서 본 건 주민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③항에 따라 2003년 2월에 독촉 고지서를 보냈으며 동일세법 제28조(체납처분)에 따라 2003년 4월에 부동산을 압류를 했고 이 압류로 인해 2003년 4월 17일에 본인과 통화한 내역과 2004년 8월 13일, 2007년 6월 18일에 통화 내역이 지방세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으며 참고로 2002년 8월에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주에게 과세된 개인균등할 주민세 5,620원을 2002년 8월 21일에 납부한 기록이 있었다.

3. 민원처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및 민원인용

주민세 부과 원인인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민원인이 교도소 수감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서류 보존연한(10년)을 경과하여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고지서가 신청인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의견과는 달리 경험칙상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민원인 부재중(교도소 수감) 주민세 부과 타당하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의견과는 달리 교도소 수

감중이었음이 확실한 바 주민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민세 부과를 취소하였다.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적극행정

대전 대덕구 권리의 가치, 납세자보호관에서 찾다	69
전북 남원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멸실인정 차량 선제적 압류해제	76
충북 보은군 신청 방문 없이 알아서 척척! 상속 지방세 환급	79
경기 남양주시 납세자 권익 보호 끝판왕, 납세자보호관	83
부산 수영구 모르면 내야되는게 세금?	91
전남 보성군 납세자와 과세관청 일석이조 우수사례	95
경기 수원시 지방세 납세자의 마음까지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97
충북 옥천군 적극행정을 통한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	100
경남 창원시 배보다 배꼽이 크다	102
충남 청양군 「직권과세제도 도입」취득세 납부방법 개선	105
서울 강남구 장애등급변경 지방세 감면 "미리 알려주는 센스(SENSE)"	108
충북 단양군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납세자보호	110

사례

01

권리의 가치, 납세자보호관에서 찾다



자치단체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당자 송연조

추진현황

납세자보호관의 정체성확립 및 업무확장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대덕구는「권리의 가치, 납세자보호관에서 찾다」운영목표와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였고, 그 내용으로 ①「더블권리보호제」는 세무조사 법인 권익보호 ②「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발송 ③지방세「현장상담실」운영 등 3가지 운영계획 수립하여 매월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추진 내용

「더블권리보호제」는 사전·사후 두 차례 권익보호·침해여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게 사전에 권익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조력에 관한 통지 후, 세무조사가 완료 된 뒤 사후에 권리 및 권익 침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의견조사서를 통하여 권리보호 여부를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즉, 사전 사후 두 번 권리보호 및 권익침해 여부를 체크한다하여 이를 더블권리보호제라 이름 하였다. 더블권리보호제의 의견조사서는 총 11개 문항으로 사전권리보호(4문항)과 사후 권리구제(7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은 세무과와 협업을 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에 의한 감면 결과통지서 발송 시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을 동봉 발송함으로써 감면에 관련된 향후 잠재적 고충 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권리·권익보호자로서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홍보하였으며,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창구 옆에 상담데스크를 준비하여 신고서식 작성 및 상담을 진행하였다.

주요성과

더블권리보호제는 45개의 세무조사 완료대상 법인을 상대로 의견조사서를 발송하였고, 이 중 38개의 법인이 설문에 참여하여 그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결과로는 세무조사 범위 및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14개 법인이 부정적 응답, 조사 공무원의 구체적 설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16개 법인이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이를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피드백자료로 전달하였다. 세부적인 의견조사서 항목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결과분석
응답항목 결과분석은 2-2. 조사범위 및 방법 등 적정성에 대한 답변이 63%로 적정 답변, 또한 2.3. 조사 공무원의 구체적 설명은 57%가 만족 답변응답
→ 분석결과에 따라, 세무조사담당자에게 향후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설명 요청함

→더블권리보호제 관련 민원해결 사례로는 지**(주)법인은 (간주)취득세760만원 결정통지서를 받고, 세무조사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정확히 이해가 안가 답답해 하던 중, 납세자 보호관이 발송한 의견조사서 수령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요지) 주주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반대급부 없이 주주변동신고를 했고, 이것으로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현금계정 장부 및 대차대조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난감함을 표하였고, 민원을 접수한 후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방안모색) 비상장 법인의 주주는 대부분 친인척 및 지인인 특수성 때문에 주주변동신고 시 신고과정 중 업무미숙이 있었음을 파악 후 (민원해결) 관할 세무서의 문의결과, 정정신고가 가능함을 알아 정정신고를 한 지**(주)법인은, (간주)취득세 추징 제외로 수정 결정 고지되어 민원을 해결하였다.

다음으로,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은 지방세 중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 취득세이면서, 그 중 잠재적 고충민원의 대상이 감면관련 업무임을 착안했다.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이나 유보기간, 고유 목적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별로 감면받은 후 준수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해 부족 또는 법령의 해석이 달라 이견이 상충할 때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감면신청 등)에 따라 감면신청에 따른 결과통지서를 송부할 때, 그 대상의 자료를 제공받아 납세자보호관이 1:1로 자료를 매치하여 조력안내문을 작성한 후 감면결정통지서와 동봉 발송함으로써 향후 미래 잠재민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의 홍보가 되었으며, 이 업무는 세무부서와의 유기적인 자료협조 및 업무 공조에 의한 협업으로 양 부서의 결재를 득한 후 감면 결과통지서와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아울러 동봉발송으로 우편료 절감 등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2월부터 발송된 조력안내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월(53건), 3월(42건), 4월(61건), 5월(73건), 6월(36건), 7월(37건), 8월(38건), 9월(234건) 발송

→(관련민원) 조력안내문 수령에 따른 민원해결사례를 살펴보면,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세 감면받은 B법인이 유보기간 내 매도로 추정되어 1차 납세담보증권으로 징수유예가 되었다. 그러나, 장기적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하여 현금사정이 불완전한 B법인은 2차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자의 담보요구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요청했으며(민원접수), 다시 납세담보증권을 발급받으려던 많은 제반 구비서류 작성해야 했고, 시간적 여유 또한 없었으며, 딱히, 다른 담보물건도 없어 방법을 모색하던 중 기존 담보증권을 발급한 보험사 상담 후 담보증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알고, 납세담보증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2차 징수유예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다.

향후 기대효과

더블권리보호제와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은 고충민원 중심의 일회성 성격이 강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지속 가능한 업무 플랫폼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영역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은 기존 세무부서의 부과·징수 업무에 익숙한 사고방식에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의 전환으로 납세자를 대변한 역할변경이 공감행정의 역할과 세무조사 과정 중의 불편·불쾌감을 해소하는 사후관리로 권리의 가치를 깨우는 신의 세정구현에 기여하였다.

참고자료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21.2.24)

The image shows several internal documents from the tax authority. The main document is the '202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2021 Local Tax Taxpayer Protection Officer Management Plan), dated February 24, 2021. It outlines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rotection officer, including providing information, handling appeals, and assisting with tax collection. Other documents include a 'two-track strategy' for handling appeals, which distinguishes between 'one-track' (direct appeal) and 'two-track' (appeal after administrative review) strategies, and a flowchart for handling appeals, detailing the steps from receiving an appeal to providing a final response.

시책 - □ 더블권리보호제

더블권리보호제는 정기 세무조사 법인 대상으로 (사전) 권리보호 요청(사후)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양방향 권익보호 제도

□-1. 더블권리보호제 관련자료

This section contains two screenshots. The left one is a screenshot of the '대덕구' (Daedeok-gu) website, showing information about the '더블권리보호제' (Double Protection System) for regular tax audits of corporations. The right one is a screenshot of an '법정 세무조사 관련 의견 수렴' (Public Consultation on Legal Tax Audit) form, which lists 11 points for citizens to provide their opinions on the system's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2. 의견조사서 구성내용 및 회수율

This section includes a pie chart titled '조사대상법인 대 설문회수율' (Response Rate of Surveyed Corporations). The chart shows that 45% of the surveyed corporations responded, while 38% did not. A callout box indicates that the response rate is 38%.

□-3. 의견조사서 항목분석

This section contains a bar chart titled '의견조사서 항목분석' (Analysis of Survey Items). The chart shows the number of responses for each item: '사전 권리보호 요청' (Request for Pre-audit Protection) with 45 responses, '수정법인 현황' (Status of Amended Corporations) with 17 responses, and '조사대상' (Survey Targets) with 34 responses. A legend indicates that blue bars represent '전체법인' (Total Corporations) and red bars represent '수정법인' (Amended Corporations).

「더블권리보호제」 관련 의견조사서 수령 후 민원 해결 사례

민원 I 간주취득세 관련 민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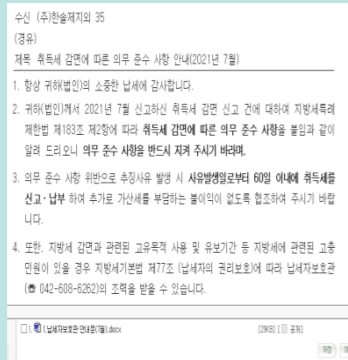
법인명	***** (주)	추징세액	7,657,990 원
세무과-140호(21.4.12) 21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 세무과-2641호(21.5.24) 세무조사 결과통지 (조기결정신청서 동봉)			
과세근거	20.7.28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대표자 이종승의 주식 지분(72.5%→92.5% 상승) 이에 따른 (간주)취득세 추징 결정		
감사실-939호(21.5.31) 법인 세무조사 종료에 따른 의견조사서 참여 협조			
민원요지	지분양도는 반대급부 없는 금전대차가 없으며, 양도인의 불입금이 법인 현금계정에 산입되지 않은 바, 이는 잘못된 주식지분을 정리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해결방안	지분양도에 따른 현금대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대부분 친인척 및 지인이어, 착오신고로 대표자의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에 관한 수정 신고함.		
세무과-9253호(21.8.30) 세무조사 결과 수정 통지 / 추징 「해당없음」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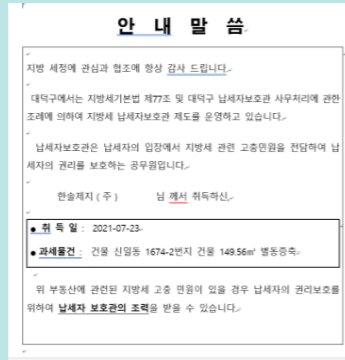
시책- □ 납세자보호관 조력 안내문 발송

월별 세무과 취득세 감면신청 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에 첨부하여 잠재적 고충 발생 시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 동봉 → 세무과와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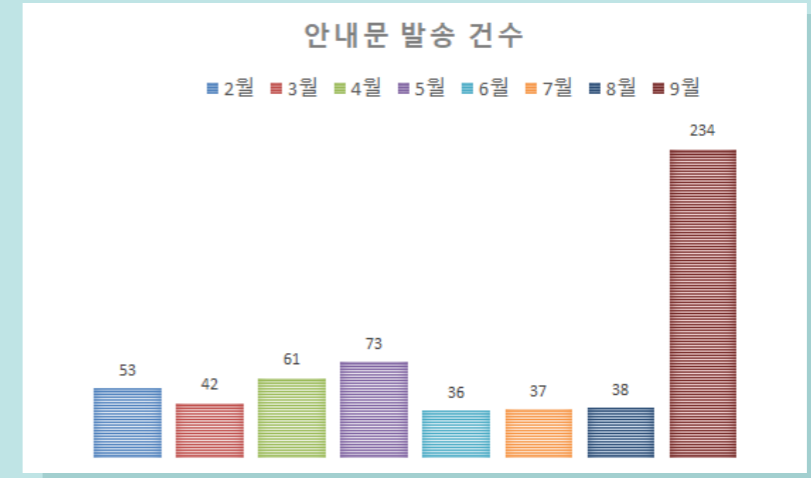
□-1. 취득세 감면통지서[세무과]



납세자보호관 조력안내문



□-2. 월별 감면통지서 현황 안내문 발송 건수



조력안내문 수령 후 취득세 감면 추정 민원 접수 및 해결 사례

민원 II 징수유예관련 민원해결 사례

법인명	***** (주)	추징세액	60,173,550 원
(21.1.27)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 법인 유보기간 내 매각에 의한 추정 징수유예(1차) (21.7.28) 코로나 등 사업상의 위기로 인한 징수유예(2차) 신청			
과세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2 4항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유보기간 2년 내 매도로 추정		
민원요지	1차 징수유예신청 시 납세담보보험증권(100-000-2020-0313-0489호) 보험기간 (20.8.1~21.1.31)신청접수, 장기 경기침체 및 현금 유통화 문제로 2차 징수유예 신청, 취득세 담당자의 납세보험기간 만료로 신청접수 거절		
해결방안	민원접수 후 서울보증보험과의 긴 상담 결과 보험의 재발급보다는 보험 기간의 연장으로 기존 보험 효력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 후 보험증권의 수정발급을 통하여 2차 징수유예 접수 조력		

참고자료

시책-□ 지방세 현장상담실 운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내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납세편의 도모 및 관내 납세자보호관 홍보 현수막(8곳) 게시 및 주민센터 중심 적극적 홍보

□-1. 현장상담실



납세자보호관 홍보



사례 02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멸실인정 차량 선제적 압류해제



자치단체명 전라북도 남원시 담당자 박용권

사례

민원인 A씨는 10여 년 전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부도를 맞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채권자들이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일명 '대포차'가 되어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불법 사용자에 의해 세금, 과태료 등 체납으로 수백 건의 압류가 등록 되었고, 그 체납액만 천만원에 달하였다.

A씨는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최근 건강악화로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행정관청을 방문, 멸실인정을 득하여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하려하였으나,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의 경우 경찰서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체납된 과태료의 납부없이는 압류해제가 곤란하다고 답변하여 답답한 마음에 납세자보호관을 찾았다.

추진 배경

현행 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는 소유주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등록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의 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말소등록을 포기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6호 신설(20.3.24.)에 따라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요건이 완화되어 지방세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반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함에도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체납자의 권리구제에는 미흡한 실정에 있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압류해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 말소 상황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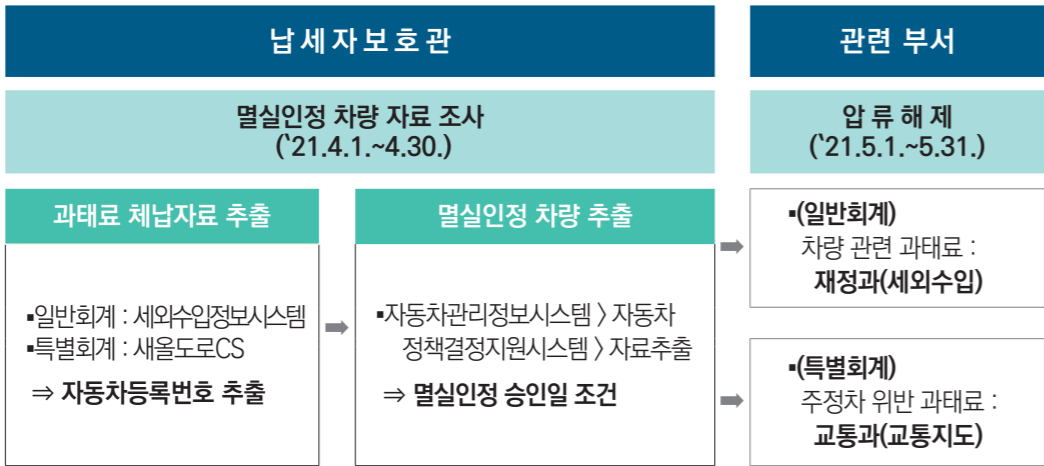
A차량	차령초과 (승용 11년)	세금, 과태료 등 압류 미해결	이해관계인 동의 불필요 (통보로 같음)	⇒	말소등록 가능
B차량	멸실 (화재, 교통사고 등)	세금, 과태료 등 압류 미해결	이해관계인 동의 불필요	⇒	말소등록 가능
C차량	멸실인정 (차령 20년+멸실)	세금, 과태료 등 압류 미해결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승낙서, 판결문 등)	⇒	말소등록 불가

추진 내용

1. 멸실인정 차량 조사 및 해제조치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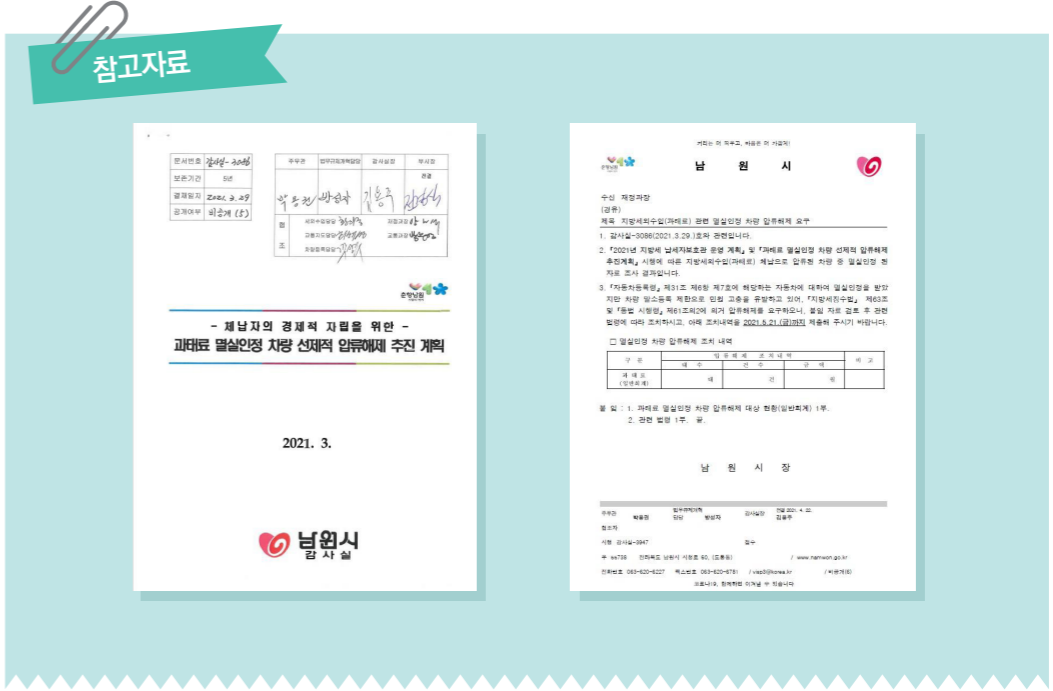
추진기간은 4월 ~ 5월이며, 해제대상으로는 남원시에서 부과된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적용)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멸실인정' 된 차량에 한하여 압류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해제 조치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다.

추진절차



2. 대체압류 예정 자료 작성·관리

압류해제 이후 대체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불납결손이 불가피하여, 채권 일실 방지와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압류해제 이후 5년간 대체압류 예정 자료를 작성,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적극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요성과

추진결과 총 258대의 '멸실인정' 차량을 추출하여, 해당 차량에 압류등록된 체납액 863건, 175백만원에 대하여 압류해제 처리하였다.

구 분	차량 대수	압류 해제	
		건 수	금 액
계	258	863	175,301
일반회계 (차량 관련 과태료)	146	572	160,433
특별회계 (주정차위반과태료)	112	291	14,868

기대효과

사실상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민원인의 고충을 상당부분 해소함으로써 체납자들의 경제적 자립지 회복에 일조할 수 있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의 적극행정 실시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 실현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 03

신청 방문 없이 알아서 척척!! 상속 지방세 환급



자치단체명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자 김세진

추진 배경

우리군은 지난 해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방문 없이도 알아서 OK !!” 사례를 추진하였다. 대부분 농촌 지역의 납세자들은 고령이고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감면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고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납세자보호관 추진 사례였다.

이 사례를 추진 중 감면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다소 발생하였다. 지방세를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공문 등으로 안내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나 매매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무지로 감면 후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번 경우를 경험하고 사후관리가 간편하고 추징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수월한 사례를 고민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환급 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추진 내용

감면신청 원칙주의를 벗어나 선제적 행정 추진

농촌지역 납세자는 감면증빙자료 발급 및 제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러 행정망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납세자의 고민은 다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적용 대상자 중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 혜택 대상자 중 누락자 다수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선제적으로 납세자 보호 업무를 추진하였다.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종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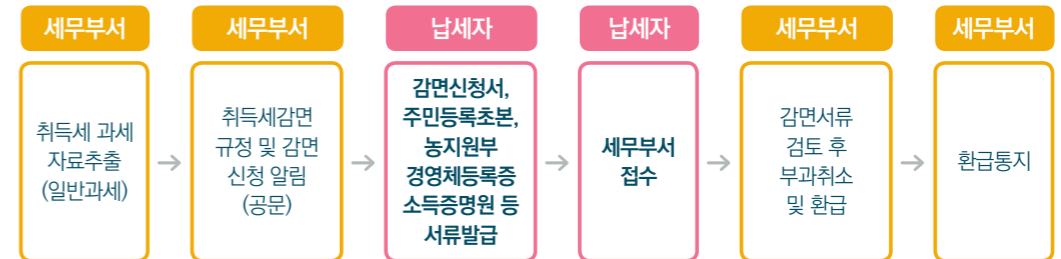
⇒ 위 법 조항을 적용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시점 기준 적용, 주택 사후관리대상 아님, 농지는 사후관리대상이나 환급액의 일부만 추징되어 민원발생 없음)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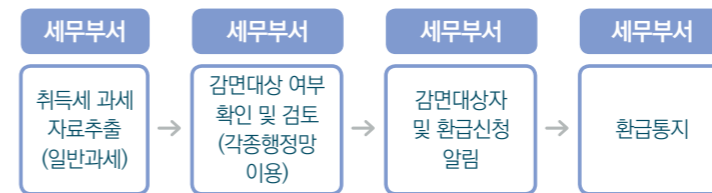
- ① 과제 선정 (지방세정 발전 T/F팀)
- ② 취득세 과세물건(농지) 취득 후 감면 못 받은 일반과세자료 발체
- ③ 감면 여부 자체검토 확인 (각종행정망 및 국세청 협조)
 - 지방세정보시스템 : 주소이력, 농지원부 사항, 1가구 1주택 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1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원 확인, 주소이력
 - 농림정보사업시스템(Agrix) : 직불금 내역,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 확인
 - 포털 사이트(kakao map) : 농지 여부 확인
 - 국세청(세무서) 협조공문 발송 : 농업외 소득 내역
- ④ 감액결정
- ⑤ 환급 및 통지(의무사항 위반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포함) : 21건 / 11,645천원 환급

- 지방세(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대상 물건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장 군수에게 감면신청(신청 원칙 주의)을 해야 하나,
-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의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추진절차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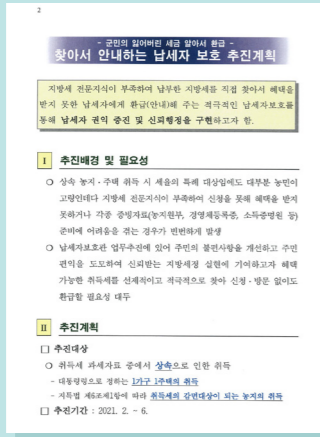
- ※ 취득세 감면은 조건부 감면사항으로 수년 동안의 의무이행 사항이 존재
⇒ 직접 사용, 소유권 이전 금지 등 의무이행 사항이 없는 세율의 특례 사례를 발굴

향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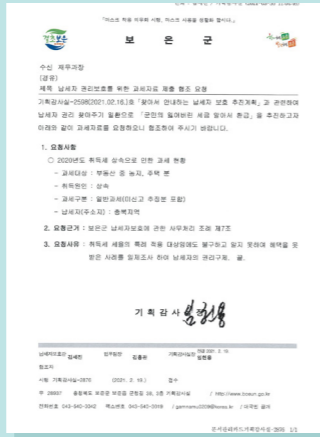
납세자 권리 보호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납세자가 같은 조건의 세금 혜택을 누리는 다른 납세자들과 차별을 받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농촌지역의 납세자가 감면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납부한 세금 (잃어버린 세금)을 직접 찾아서 환급해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동시에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한발 더 나아가 직접 사용, 소유권 이전 금지 등 의무이행 사항이 없어 주민 부담은 완화되었고 취득세 담당자의 사후관리 관련 민원 처리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신청 방문 없이 알아서 척척! 상속 지방세 환급"을 통해 신뢰받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정착과 동시에 잃어버린 납세자 권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추진계획 공문



과세자료 협조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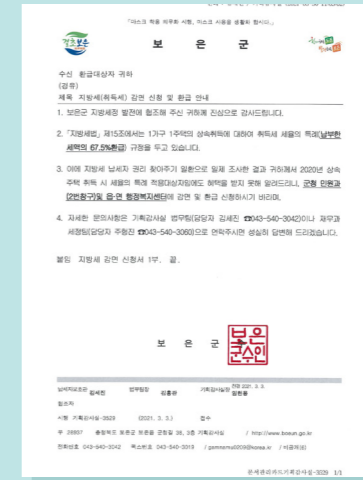
농림정보사업시스템 활용



위성사진/ 로드뷰를 활용



감면 및 환급안내 공문



사례
04

납세자 권익 보호 끝판왕,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 운영)



자치단체명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자 장동단, 최예지

끝판왕

‘끝판왕’(마지막 판에 이르러 볼 수 있는 왕.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나 그러한 대상을 이룸) 어휘 뜻처럼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강화를 위해 선발된 전문인력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 및 권익 보호에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해결 방법의 제시자를 표현하고자 함.

추진 배경

자치단체 시민을 위한 권익보호자

- 3기 신도시 사업 등 개발사업이 한창인 우리 시의 부동산 수용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주민들의 조기 재정착을 위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 등) 정보 제공의 필요성 증가
- 신도시 개발과 창업 열풍으로 지식산업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세 안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의 안정화로 일하기 좋은 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의 제시
- 지역특성(도농복합)으로 인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및 이행요건의 정보 제공 필요성 등 현재 자치단체 여러 사업과 맞물려 실질적인 남양주시민의 권익보호자로서의 역할 수행

기타 참고사항(현재이슈)

3기 신도시사업

[기획] 3기 신도시 길라잡이 '남양주'

지식산업센터의 열풍

공부방경제 2021.02.16

남양주 수도권 동북부 비즈니스 요충지로 발돋움 눈길 끄는 지...

농지 취득의 관리

오마이뉴스 2019.06.20

영국 귀농의 눈높이를 맞춰 홍보하고 교육해야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 운영은 감면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감면 적용을 못받거나, 감면 이후 이행 규정의 미준수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포함한 추징 등 납세자에게 생각지 못한 세금으로 고충 민원 발생. 세정부서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력과 민원 처리에 대한 피로도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사전·사후 관리라는 적극세무행정 방안 도출

계획 수립 및 추진 내용

1. 부동산 수용 대상자를 위한 대체취득 감면 [사전 관리]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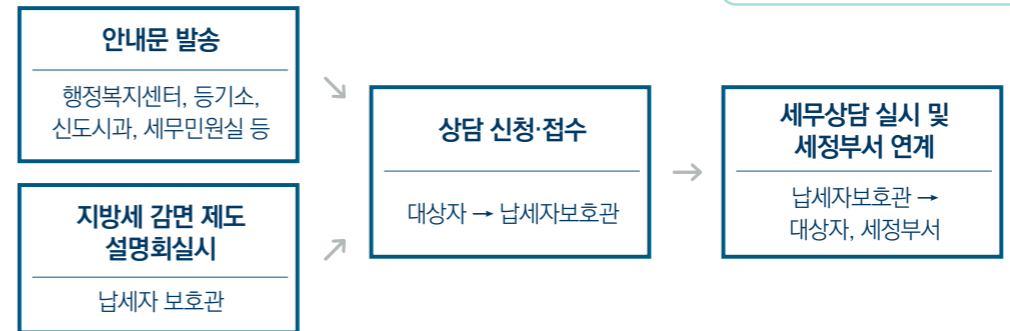
- 기 간 : 2021. 3. ~ (상시)
- 대 상 : (3기 신도시 지역)지방세특례제한법제73「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자
- 방 법 : 대체취득 감면 안내문 배포 및 전화(방문) 상담, 읍면동 각종 회의 시 제도 설명(*코로나19로 읍면동 협의 후 추진)
- 운영절차

계획 수립 공문

문서번호	남양주조세0000000000	문서명	부동산 수용 대상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상담 운영 계획
발행일자	2021. 03. 03	발행처	남양주시세무서
수령일자	2021. 03. 03	수령처	남양주시세무서
발급부서	남양주시세무서	발급처	남양주시세무서

부동산 수용 대상자에게 관공비 요충지인 감면제도를 안내하여 납세자지연 및 선반을 보호하고자 함

법 무 당 관
(납세자보호관)



<추진 내용>

- 각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 지방세 감면제도 설명회 및 상담 실시
- 남양주홈페이지, 보도자료, 안내장 등 지방세 감면제도 홍보
- 주요내용
 - 취득세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사항
 -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세제 지원 안내
 - 지방세 관련규정, 세율, 적용 대상, 부재지주 등 감면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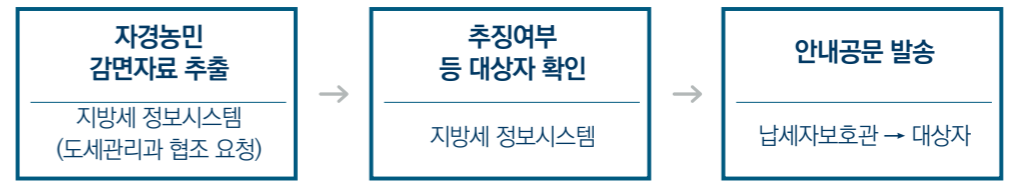
- 마을 세무사와 연계 국제 상담 서비스
- 납세자보호관의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납세자보호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제도 안내

설명회 실시 사진, 홍보물, 공문

2. 자경농민 농지 취득으로 인한 감면 [사후 관리]

<계획 수립>

- 기 간 : 2021. 6. 부터(상시운영)
- 대 상 :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감면」 규정예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
- 방 법 : 안내장 발송 및 전화(방문) 상담
- 운영절차



<추진 내용>

- 감면 기등록 과세 자료 검토 후 감면 사후 이행 규정 안내장 발송 (2020년 상반기 자경농민 농지 취득 감면 등록자 57건, 감면세액 262백만원)
- 주요내용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 감면 기간 내에 직접 사용에 관한 요건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 의무 사용 기간 및 보유 요건

공문 및 안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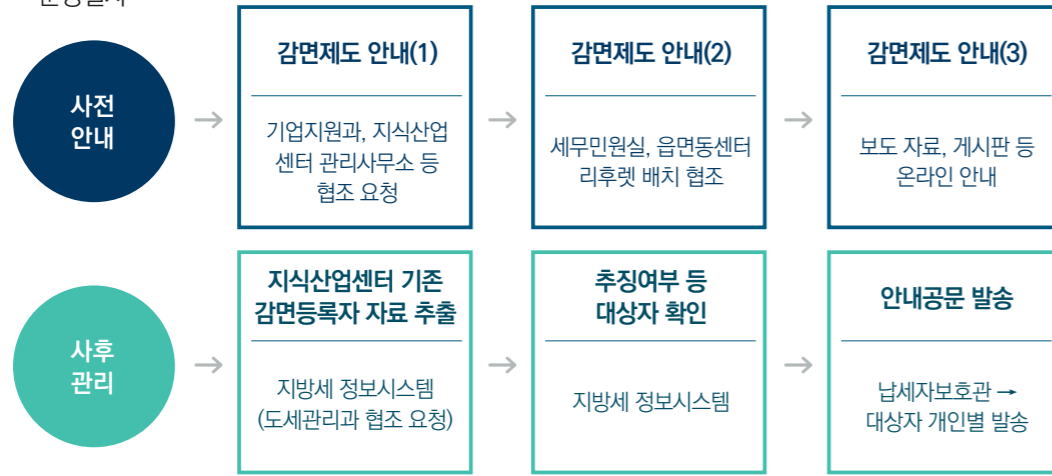
계획 수립 공문

3. 지식산업센터 취득으로 인한 감면 [사전·사후 관리]

〈계획 수립〉

- 기 간 : 2021. 8. 부터(상시운영)
- 대 상 : 2020년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
- 방 법 : 감면제도 안내, 지식산업센터 방문, 안내장 발송 및 전화 (방문) 상담

• 운영절차



〈추진 내용〉

- 사전 안내 :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 분양사무소 등과 협조로 감면 제도의 안내 및 홍보로 정보 접근성을 높임
- 사후 관리 : 감면제도의 기존 등록자를 대상으로 사후 이행관리 안내장 발송 (지식산업센터 감면 등록자 569건, 감면세액 3,013백만원)
- 주요내용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 감면 기간 내에 직접 사용에 관한 요건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 의무 사용 기간 및 보유 요건
 - 직접 사용한 기간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취득세 납부 사유 발생시 자진신고 및 가산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안내

공문 및 안내장, 보도자료

계획 공문

등록번호	현무담당문-0802
등록일자	2021. 08. 05.
발급일자	2021. 08. 05.
공제구분	부분공제(0)

**- 지식산업센터 취득에 대한 -
「지방세 감면 제도」 상담 운영 계획**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취득 납세자에게 감면제도 의무사항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익 및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는 취극행정을 하고자 함.

법 무 담 당 관
(납세자보호관)

사후관리 안내장 발송 공문

-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하다 -

남 양 주 시

수신 내무과장
(일부)

본문 제발에 집행과(지식산업센터 취득 관련) 상담 운영 안내장 발송

일부발령일-981(2021.8.6.)호와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취득, 고액 취득, 납세자에게 안내장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지식산업센터 취득 등록 증분 보유자 (총 569건 (822, 846, 030원))
2. 발송일 : 2021년 8월 6일
3. 발송방법 : 우편 (발행)
4. 발송내역 :

구분	연수	공제세액
총계	219	882,846,030
대상등록일 19일(21.03.1.)	197	786,740,980
대상등록일 20일(2021.03.1. ~ 2021.03.31.)		
대상등록일 21일(2021.03.1. ~ 2021.07.31.)	22	117,105,050

붙임 1. 제발에 집행과(지식산업센터 취득 관련) 상담 운영 안내장 발송 내역 1부.
2. 제발에 집행과(지식산업센터 취득 관련) 발송 1부. 끝.

안내장 홍보물

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해결하세요

- 지식산업센터 취득감면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요건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58조 제 2항)

1. 설립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분양 받는 자

종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영위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 기업에 영위하는 경우)

3. 감면율

- 취득세: 경정(상할지 35%, 분할지 50%) (22.12.31. 까지)
- 재산세: 37.5% 경정 (22.12.31. 까지)

4. 추정요건

1. 설립자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직접사용에 관한 요건
-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매각·증여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할 경우

2. 분양 받는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5. 추징사유 발생 사례 (예시)

- 매각 및 임대 (무상임대 포함) -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무상 및 일부 사용 포함)
- 감면 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분양 사용 - 개인이 분양 일부 후 임대를 설립하여 임대의 사용 목적을 변경 제1차실용성 및 신고 조항 미준수 시 발생

6. 자진신고연내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신고 및 납부))

유치세를 비과세, 과세연내 또는 공판은 유예 기간 내에 과세할 경우 과세연내 또는 공판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과세연내 또는 공판 대상이 되고 과세연내 또는 공판 대상이 되고 납부하여야 함

※ 공문 발송은 부속제에 대한 연내 납부기간의 대상에 대해 추징사유 발생을 알려주는 기간에 따라 발송하여야 하며 과세연내 신고 및 납부 시 과세연내 기간을 추가 부담하여야 함.

7. 납세자보호관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후 관련 규정(연세기안제)의 사용, 의무 사용 기간 준수, 신고, 세무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업무 수행하는 경우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추정 예정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제도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납세자보호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031-590-7318, 3989)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보도자료

위클리오늘

HOME > 전국 > 경기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큰 호응

시세황국 기자 | 승인 2021.10.07 18:22

▲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큰 호응

[경기 위클리오늘=북부경기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9월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이용 수요 증가와 더불어 해당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사후 이행 규정과 가산세 면원이 다수 발생해 지방세 관련 고충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9월 1일부터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 분양사무소 등에 방한해 감면제도 홍보 활동을 요청했고, 최근에는 관내 다산물류유통 지식산업센터 등 이미 감면받은 5곳의 납세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감면 내용, 사유이행규정, 자진신고, 가산세 등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사례포함)

지방세 감면제도 설명회 및 상담을 통한

지방세 교육으로 남양주시민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납세 문화 형성

#. 사례1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한창인 지역에 거주 중이던 K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게 된 납세자보호관의 부동산 등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지방세 감면제도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 설명회서 여러 정보를 습득 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상담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에 문을 두드렸다. K씨는 50년 이상을 한곳에서 거주하던 시민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과 보상금 등 주거안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 적절한 상담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에선 k씨의 수용대상물건과 대체취득이 가능한 지역, 취득의 시기, 부재주요건 등 k씨에 게 맞는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고통 경감하고 납세자의 만족도를 이끌었다.

#. 사례2

지역단체 등에서 추가 설명회 요청으로 읍·면·동 협조하에 설명회 실시

지방세 감면 등록 후 이행규정의 안내를 통해 사후관리 행정력 절감

#. 사례

남양주시에서 자경농인 납세자A씨는 2020년 4월 농지취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백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올해 9월 개인사정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납세자보호관에서 발송한 농지 감면 관련 규정 안내장을 받고 상담 문의를 했다. 감면 등록 시 대리인을 통해 취득세 신고를 했었고 사후 이행 규정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 하다가 안내장에 추징, 가산세 등 내용을 보고 놀랐으나, 상담을 통해 아직 자진신고의 기회가 있어 안도를 했다. 더불어 납세자보호관에서 보낸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행정서비스인 '지방세 감면 제도 안내'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감면제도 안내로 가산세가 가중되는 불이익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익 향상

#. 사례1

창업 열풍으로 남양주시에 다산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납세자C는 납세자 보호관에서 발송한 안내장을 받고 감면 적용 받았던 세금에 대한 문의를 해왔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2개 보유 중이던 납세자C는 사업계획에 변경으로 보유하던 곳중 하나를 지인에게 무상임대 중이었는데, 감면시에 대리인을 통해 신고했던 취득세의 보유기간, 타용도 사용 등 사후 이행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안내장을 받고 문제상황에 놀라움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문의했다. 다행히 납세자C는 무상임대계약일 이후 60일 이내라 자진신고의 기회가 남아 있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다. 사실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 납세자 스스로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추징, 가산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감면 이후에 적시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 납세자에게 문제의 해결의 기회를 제공,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 민원의 소지를 줄이는 지방세 감면제도는 두루두루 효율성을 높이는 똑똑한 적극세무행정의 발판을 마련한 사업이다.

향후 계획...

취득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 납세자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모든 상황을 숙지하기 어려워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과 추징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민원 감소, 사후관리 행정력의 절감까지 이끌 수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찾아가는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 운영이 장기적인 납세자보호관의 사업에서 업무로 안착해 납세자의 권리와 권익이 보호되기 위하여 다각도로 전파 방향을 도모할 것이다.



사례
05

모르면 내야되는게 세금?



자치단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당자 반경숙

사실 관계

민원인과 세무 고충상담 과정에서 차령 초과로 말소된 자동차나 공매·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의 압류 해제 사항이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었다.

전산시스템상 압류 사항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더라도 관련 세금이 체납이나 결손 금액으로 남아있게 된다. 세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민원인은 이런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체납금액이 소액이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의 납세자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이 모르고 내는 세금'이 없도록 전산 압류자료 정리를 추진하였다.

#. 사례 1

민원인이 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 대출신청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였으나 체납과 결손액이 존재하여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어 세금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었고 민원인이 차량이 오래전에 없어졌다고 주장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로 차량 말소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지방세 시스템 전산 미정리로 인한 문제로 압류 해제 후 민원을 해결 하였다.

#. 사례 2

국세환급금 압류로 추심된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처리하기 위해 납세자의 체납액과 압류사실을 확인하는 중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내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로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압류가 정리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지방세 시스템 전산 압류 해제를 처리함으로써 체납액이 시효소멸로 전환되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추심금액을 환급 처리 하였다.

추진 내용

1. 조사대상의 선정

압류된 모든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 전산 압류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소멸시효 완성 후에 세금을 과오납할 가능성이 있는 2015년 이전 압류 자료로 대상을 한정하기로 하였다. 세무부서 협조로 전체 압류 자료 중 2015년 이전 압류되어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부동산과 자동차 자료를 조회한 결과 부동산 835건(623명), 자동차 7,053건(3,601명)의 압류가 확인되었다.

압류물건	인원	압류건수	건수 (체납+결손)	체납액	결손액	총합 (체납+결손)	비고
부동산	623	835	5,814	231	2,723	2,954	2021.4월말
자동차	3,601	7,053	37,229	887	4,152	5,039	현재

2. 조사방법에 대한 고민과 추진

조사대상 압류 자료를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직접 비교 대사하는 것이 좋으나, 시간 소모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많은 자료를 조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였다.

전국재산조회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관련 자료와 압류 자료의 일치 여부를 대사하여 조사 대상을 1차 선별한 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1) 부동산 압류대장 정비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부동산 압류자를 추출한 후 토지정보과로 전국재산조회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 자료 중 무재산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자료를 우선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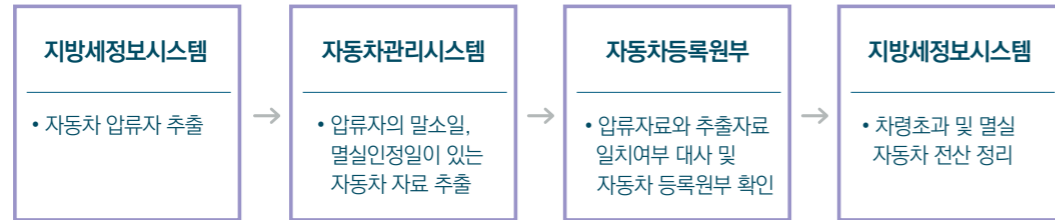
그리고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지적전산자료가 미정리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지방세 공매·경매원료 대장자료를 추출하여 추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 후 압류자료 전산 정리를 완료하였다.



2) 자동차 압류대장 정비

자동차정책결정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압류자의 자동차 말소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고 차량등록번호로 조회 신청하였으나 오류가 계속 발생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준 말소차량을 조회하게 되었다.

추출항목은 차량등록번호, 차명, 모델연도, 말소일자, 말소구분, 소유자명, 멸실인정 승인일 등 압류자료 확인 시 필요한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으로 자료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자동차 압류자와 추출한 말소차량의 일치여부를 대사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재확인하여 차령초과 및 멸실인정 자동차에 대해 전산 정리를 처리하였다.



주요성과

전체 조사대상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압류해제 및 자동차등록원부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방세 시스템의 압류대장 전산자료 부동산 61건(50명), 자동차 960건(711명)을 압류 해제하고 정리 완료하였다.

이들 중 부동산, 자동차 모두 압류된 경우도 있었으며, 전산 압류 해제 정리 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193명 체납(결손) 451건 47백만원이 시효소멸로 전환되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정리 내역

(단위 : 명, 건)

압류물건	인원	압류건수	→	압류해제	인원	해제건수	정리율 (건수)
부동산	623	835		부동산	50	61	7.3%
자동차	3,601	7,053		자동차	711	960	13.6%

압류해제로 인한 시효소멸 결손 처분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정리인원	체납→시효소멸		결손→시효소멸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3	67	5	384	42	451	47

기대효과

납세자보호관으로서 '민원인이 모르고 내는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한 일이다. 작은 의문으로 시작하였지만, 압류 말소자료 소급 정리에 따른 시효완성으로 많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고, 체납처분 효력이 없는 무재산자의 조세채권을 과감히 정리하여 세무행정 효율성 및 건전성을 증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처리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 나아가 지방행정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례
06

납세자와 과세관청 일석이조 우수사례



자치단체명 전라남도 보성군 담당자 공영배

📄 사실 관계

민원인은 보성군에 소재한 농지를 2018년 2월 28일에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다. 농사를 짓던 와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해당 농지를 2020. 3. 6.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서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나, 민원인은 자경기간 8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서 별고세무서 및 보성군청은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직권 과세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납세자보호관실로 방문하였다.

📄 민원 내용

1. 민원인 인적사항

- 성 명 : 김OO(자, 43세 - 물건 양도인), 김OO(부, 70세)
- 물 건 지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OO리 OO번지

2. 민원 요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토지의 소유권만 한국농어촌공사로 바뀌었을 뿐 현재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임차기간 내에 소유권이 다시 자신명으로 바뀌는 점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직권과세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추진 내용

민원의 사실관계 및 요지를 들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국세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해당 내용을 마을세무사에게 문의하였다. 마을세무사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경기간 8년 이내에 판매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나,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설명하

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다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주었다. 이 설명을 들은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쉽게 알려주었고 이에 수긍한 민원인은 체납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 추진결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기 힘들데 일반 농민이 양도소득세의 특례까지는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 또한 국세청 통보자료만 봤을 때 해당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것은 사실상 양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더욱 억울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을세무사를 활용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는 이해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체납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사례
07

지방세 납세자의 마음까지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자치단체명 경기도 수원시 담당자 김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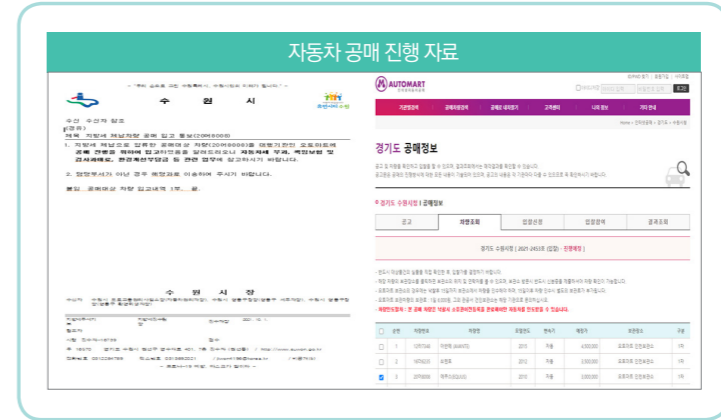
사실 관계

민원인은 2020년 3월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주식관리를 하던 남편이 고객들 돈을 모두 잃고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 후 남편명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3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 판결을 받았다.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고통이 심한 상태에서 10년이 넘는 연식과주행거리 30만키로 이상이며 차량 가치도 없고 세금과 보험료, 정기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운행하지도 않는 고인과 본인의 5:5 공동 명의 지분소유한 20어8008 승용차(2009년, 예쿠스)에 대해 자동차 말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3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포기 판결로 상속자의 지위상실 상황이되어 단독으로는 매각,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행정기관의 통보를 받았다. 차량말소를 위해 4차 상속인을 찾아 상속포기 판결문을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무료법률센터에도 두 번이나 상담해 보고 국민권익위에도 알아보았지만,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었고 살던 터전을 잃고 아이와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상태로 생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 제시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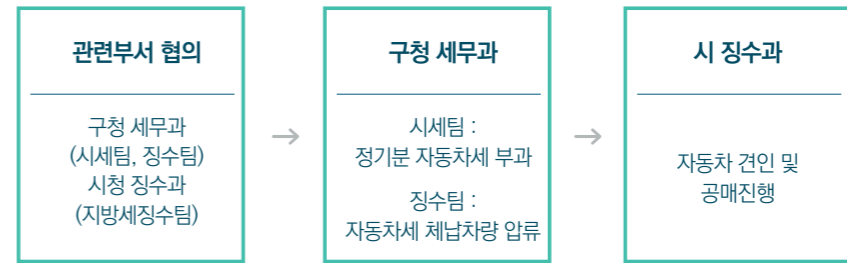
해결과정

1. 자동차 처분을 위한 부서 담당자 업무협의 진행

민원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과, 압류, 공매 담당자 협의를 거쳐 고충처리를 진행하고자 진행하였으나 인사발령으로 3개업무 담당자가 모두 교체되어 담당자 재협의를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부과 담당자와 민원인 고충내용을 공유하여 3차에 걸친 협의·확인을 통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확인하고 구청 세무과 차량압류 담당자와도 자동차세 체납 후 즉시 압류처리 협의로 고지서 10월 공시송달 종료후 체납차량 압류와 자동차 등록 원부 압류촉탁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청 징수과 자동차 공매담당자와 6월 자동차세 체납차량 공매추진을 사전에 협의하여 차량인수와 보관소 입고 및 11월 공매공고를 거쳐 12월 말까지 배분 등 민원인 고충처리 완료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 민원고충 처리 절차



3. 지방세 납세자의 마음까지 보호 지원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간 민원인이 겪었을 심리적 고충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힘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심리상담을 원하면 무료 심리상담을 찾아봐서 안내해 주겠다고 제의하니, 돈이 들어 갈까봐 상담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시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심리상담 기관을 찾아 네 군데 기관에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알려주고 상담유형을 선별하여 민원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을 것 같은 곳을 알려주며 상담예약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함을 안내하고 상담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찾아보겠다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고자 하는데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물어보고 승낙을 받은 후 거주지 동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하였더니, 동 담당자는 당사자의 급여 및 부동산·금융재산 보유정보 조회 동의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지원 방법 등 지원을 검토해 주기로 하여 민원인과 연계해 주었다.

기대효과

지방세 납세자의 경제적·심리적 고충해결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 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과 지방세 성실납부 환경조성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사례 08

적극행정을 통한 서민주택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 농어촌특별세 환급



자치단체명 충청북도 옥천군 담당자 이유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납세자는 복잡한 지방세 과세체계로 인하여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발급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을 취득할 때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는데 농어촌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도시지역을 제외)지역은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납세자들이 서민주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부과한 경우에도 그대로 납부하고 있다.

지방세 과세담당자들이 정확히 부과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복잡한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규정으로 일선 담당자들조차 모든 조항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서민주택에 대한 농특세 부분은 취득세 부과 시 자동 감면이 아닌 과세담당자가 직접 감면여부를 선택하여야 하고 인사이동으로 담당자 변경 시 부과업무 미숙으로 비과세 대상 농특세임에도 착오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추진 내용

농경지가 많은 군 단위 지역은 자경농민 감면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서민주택에 대한 농특세 부분은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주된 세목이 아니고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목이어서 착오로 납부를 하였어도 환급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이에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착오납부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였으며 환급을 추진하였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중 농특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서민주택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 안내문과 환급신청서를 발송하였다. 납세자 112명 115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02명 105건 약 1천3백만원의 농특세를 환급완료하였다.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찾아오는 민원 상담 등 수동적인 업무처리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다가가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환급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며, 과세관청의 자발적인 환급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에 한발 짝 다가갈 수 있었다.

또한 서류작성을 어려워하는 민원인을 위해 최소한의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납세자별로 각각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발송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드려 많은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주기적으로 재무과와 협조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한다면 세금만 뜯어간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 과세관청에 대한 조세저항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 09

배보다 배꼽이 크다



자치단체명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자 김미란

추진 배경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은 주된 것보다 딸린 것이 더 크거나 많음을 뜻한다. 당연히 작아야 할 것이 더 크고, 적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 그런 경우이다. 차량이 오래되고 환가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행방을 찾지 못하니 해결방법이 없어 세금,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의료보험등의 압류사항이 매년 차곡차곡 쌓여 배꼽이 더 커버린 형상이다. 납세자는 커져 버린 체납에 해결의지를 잃어버리고 뭉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관하는게 대부분이다. 이에 소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계속 피해를 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체납을 사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 피해사례

- 10여 년 전 중고차 매매상사에 양도이전을 맡겼는데 차량만 가져가버리는 바람에 멸실되었음. 이후 불법 사용자에게 의하여 수십 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었음. 경제적으로 어려워 압류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압류를 해결하기 전에는 말소가 불가함 (2019.12. 국민신문고)
- 20년 전 병원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 현재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임. 뒤늦게 확인해 보니 압류가 100건이 잡혀져 있어 말소등록도 할 수 없음 (2018.4. 국민신문고)

추진 내용

1. 사전검토

납세자보호관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동차세 비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멸실인정제도

적법절차 없이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간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지자체장이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2. 대상 확정 및 안내문 발송

우선, 자동차세 체납 6회 이상 자료중에 차량과 운행기록 요건에 부합하는 체납차량을 추출하여 확정하였다. 그리고 멸실 인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차량 소유 납세자에게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차 령〉

- 차량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량 10년 이상인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량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량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운행기록〉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정기검사등 최근 3년간 운행사실 없어야 함

추진 흐름



- ① 자동차세 체납 6회이상 차량중 차량이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동차 자료 추출 : 1667건
- ② 3년간 운행사실 없는 차량으로 대상 확정(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정기검사등): 180건
- ③ 차량 멸실 인정 제도 홍보 안내문 발송
- ④ 신청접수(차량등록과 3개소)

기대효과

선제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과부와 등록부서간의 협업으로 「자동차 멸실 인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서 오던 민원만 처리하던 업무방식과 부서간의 협업 부족 행정행태를 벗어나서 납세자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킨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시사점

납세자가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게 되면 기존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하지만 멸실인정된 날짜 이후 위반 사항이나 압류건들에 대해서는 면책된다. 더 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소멸되며 정기검사 의무도 사라진다.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부과되던 지역 건강보험료도 조정이 되며 기초생활수급 책정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된다. 부과부서나 등록부서에서는 의미없이 매년 되풀이되는 고지서 발송등으로 인한 징세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불필요한 압류 및 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수 있게 된다.



사례 10

「직권과세제도 도입」 취득세 납부방법 개선



자치단체명 충청남도 청양군 담당자 조정희

추진 배경

청양군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지방세 신속 지원과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과세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고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군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 행정체계 운영으로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업무처리 시 민원인이 등록면허세(면허)·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에도 인·허가 부서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여 미납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에 따른 불만과 신고·납부를 위해 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세무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받아 취득세 신고·납부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은 가설건축물 축조와 토지 지목변경 인·허가 민원처리 후 1년 이상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와 지목변경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이다.

이 점에 관심을 갖고 납세자 고충 해소를 위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결방법을 고민하던 중 세무부서와 협의하여 「직권과세제도」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 내용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와 인허가 부서 재방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세무 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민원봉사실(건축팀, 부동산관리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와 토지 지목변경 자료를 일괄 요청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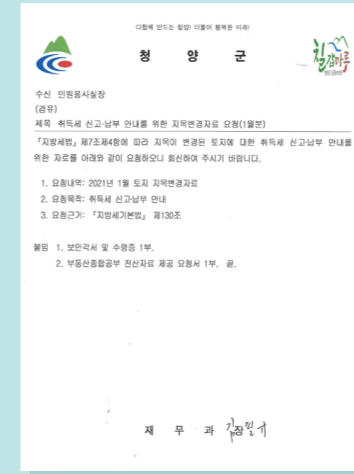
관련 부서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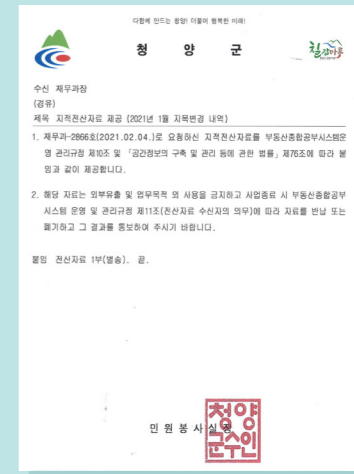
해당 과세자료를 기초로 가설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및 지목변경 토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요청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취득세를 직권으로 산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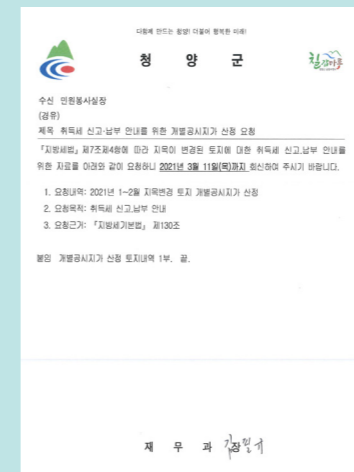
세무부서 과세자료 요청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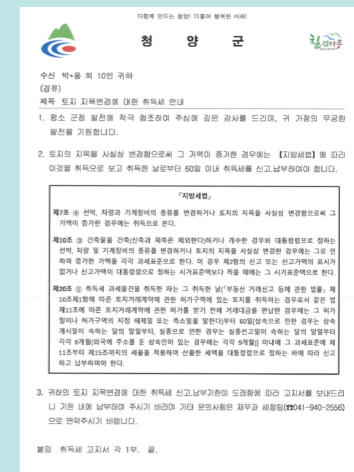
인·허가 부서 과세자료 회신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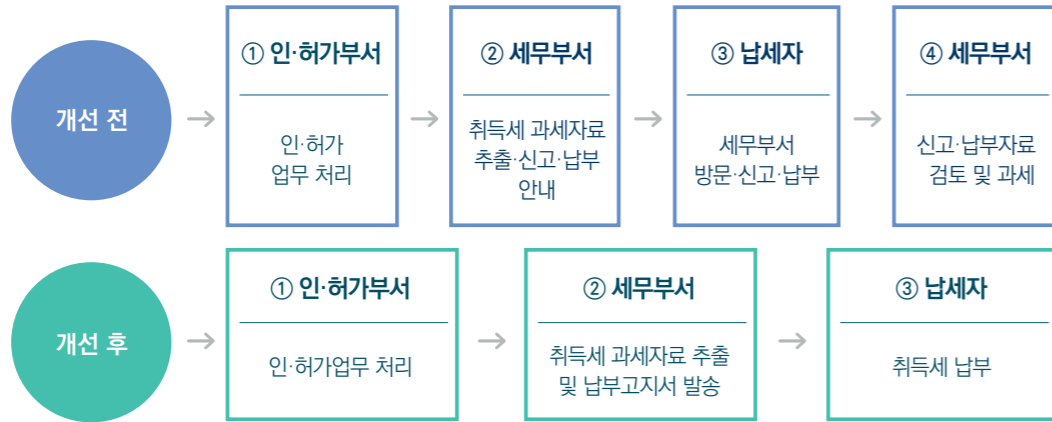
공시지가 산정 요청 공문



세무부서 취득세 부과고지 공문



- 한편, 취득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세무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 문의 시 납세자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덜고 기관 재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이 제도 추진결과 취득세 납부 고지서와 신고·납부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여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20%) 부담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기관을 재방문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고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알 권리 충족으로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되었다.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직권과세제도」도입으로 취득세 납부방법 개선과 인·허가(가설건축물 축조 및 토지의 지목 변경) 취득세 신고절차 미이행으로 발생한 가산세 ZERO화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 감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1년도 취득세 부과·고지 및 가산세 ZERO화 현황〉	
부과·고지	미신고 가산세 ZERO화
가설건축물: 322건 20,160천원	가설건축물: 4,032천원
토지 지목변경: 141건 7,309천원	토지 지목변경: 5,461천원

향후 인·허가 부서와 세무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안정적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고충 및 불편 해소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사례 11 장애등급변경 지방세 감면 “미리 알려주는 센스(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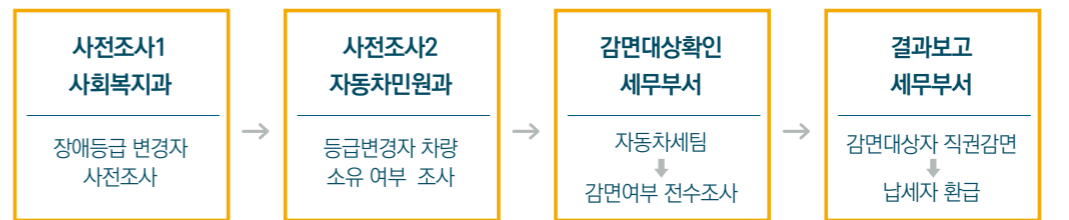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자 최상수

추진 현황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변경으로 감면신청 또는 직권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납세자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정보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강남구 납세자 보호관은 장애등급이 변경된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세금감면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총 82대가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착오납부된 자동차세 총 39,239천원을 환급하였다.

추진 내용

- 대 상 : 2019년 1월 1일 ~ 2021년 7월까지 장애등급변경 장애인
- 기 간 : 2021. 8. 1.~9. 28. (사전조사기간 포함)
- 방 법 : 과세자료(감면포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 상호교차 검수
- 추진결과



- 부서별 협조사항으로
 - ①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6,806명 장애등급 변경자 확인하였으며,
 - ② 자동차민원과를 통하여 장애인 소유차량 총 2,962대 4,243명에 대한(공동명의포함) 내역을 조사하였으며,
 - ③ 세무부서에서는 2021년 자동차세 과세 및 감면자료를 제공받았다

• 조사결과로

- ① 2019년부터 2021. 7월까지 총 6,806명의 장애인이 등급이 변경 되었으며, 이중 4,525명(공동소유포함)의 명의로 2,962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었고,
- ② 이중 2,634대(4,002명)는 이미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 ③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328대를 건별로 조사한 결과 246대는 타시구로 전출되거나, 공동명義자의 주소 상이 등으로 감면이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82대가 감면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조사현황

(단위 : 대 / 명)

장애등급 변경자	차량소유자 (본인+공동)	자동차 대 수 (A)	기감면현황		조사대상 차량대수	조사결과 감면대상 차량	비고
			감면자 (본인+공동)	차량대수 (B)			
6,806명	4,525명 (2,990+1,535)	2,962	4002명 (2661+1341)	2,634	328	82	246대는 감면불가 등

주요성과

조사대상 차량 328대 차량 중 기감면, 주소 상이 등으로 246대를 감면제외 하고, 나머지 82대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약 39백만원 세액을 환급하였다.

비록 환급세액이 많지 않지만 장애인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의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할 납세 취약계층에게 큰 신뢰감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시사점 및 기대효과

지방세 감면시점은 장애등급 변경일자로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견 된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장애등급 변경자에게 해당 감면사실을 안내하고, 세무부서에서는 장애등급이 변경된 자를 확인하여 감면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하며,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담당자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므로 감면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세정에 큰 기여가 되었으면 한다.

사례
12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납세자보호



자치단체명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자 이미선

사실관계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은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없고 매일 가야한다고 생각했던 학교, 회사조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대로 가야하고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추석과 설 명절조차 가족들과도 만날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사회상황을 초래했다. 그야말로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 전반이 공공 얼어버렸고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경제 분야의 피해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두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제 분야의 납세자보호에 대해 고민하다 세무조사 업무 당시 영세한 기업이 지방세 감면규정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납세자보호”를 추진하게 되었다.

단양군은 매포, 대강, 적성에 4개의 산업단지에 40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주로 제조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지방세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신·증축: 50%, 대수선 25% 경감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 75% 경감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 신·증축: 25%, 대수선 15% 추가 경감
- 취득세 감면되는 부동산의 재산세(수도권 외) 5년 간 75% 경감

추진 내용

먼저 7월에는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대사해 본 후 기업에 연락을 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니 경정청구를 안내했으며 세무부서인 재무과와 함께 확인하여 경정청구 접수를 받아 환급을 해주었다.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취득세과세자료 중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자료 추출
- 감면 및 경정청구 안내문 발송(감면 추정사유 등 유의사항 명기)

또한 취득세 감면되는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세 프로그램 재산세 대장에 감면코드 적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무과에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



- 재산세의 경우 증세가 많아 정확한 환급액 산정이 어려워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자료 재무과 통보 후 납세자 안내 추진

주요성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여부를 확인한 결과 2개의 법인에 대해 약 19백만 원의 취득세를 환급해주었다. 특히 산업단지 최초 입주할 당시에는 산업단지 관련부서와 재무과의 소통을 통해 감면 안내가 잘 되었으나 입주 후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감면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문 세무회계 업무를 보는 직원이 없는 법인의 경우도 많아 적극적인 납세자보호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납세자	과세물건	용도	취득일자	납부세액	정당세액	감면세액
(주)라*플*스	합 계			5,936,000	2,565,200	3,370,800
	건물 매포음 평동리 ** (450㎡) 신축	공장	2020.12.15.	5,936,000	2,565,200	3,370,800
대*안*	합 계			24,672,330	9,414,320	15,258,010
	건물 매포음 평동리 ** 과표누락분			3,308,800	1,234,070	2,074,730
	건물 매포음 평동리 ** (162.75㎡) 신축	공장	2020.02.04.	2,581,730	988,570	1,593,160
	건물 매포음 평동리 ** (83.48㎡) 증축	공장 사무실	2019.02.22.	1,465,360	561,080	904,280
	건물 매포음 평동리 ** (449.46㎡) 증축	공장	2018.05.10.	4,276,030	1,637,320	2,638,710
	건물 매포음 평동리 ** (147.2㎡) 신축	창고	2017.07.25.	2,093,180	801,490	1,291,690
	건물 매포음 평동리 ** (89.25㎡) 신축	창고	2017.03.23.	1,269,130	485,950	783,180
	건물 매포음 평동리 ** (153㎡) 신축	공장 기숙사	2017.03.23.	2,717,140	1,040,420	1,676,720
건물 매포음 평동리 ** (489.52㎡) 신축	창고	2017.03.23.	6,960,960	2,665,420	4,295,540	

파급효과

취득세는 신고세목으로 신고 당시 납세자가 직접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실제 알아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흔히 말하는 '경리 직원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과 과세누락 부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납세자보호관이 되어보니 막상 손 틈사이로 새는 과세 누락만큼 납세자의 권리 또한 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스스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는 납세자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민 등 감면 조항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 파급효과일 것이다.

향후계획

앞으로도 지방세법에 대해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감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는 적극적인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다자녀양육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할 경우 감면되는 사항이 적용이 되었는지, 자동차세는 감면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였다면 안내를 추진하고 재무과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또한 자경농민, 농업법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부분도 감면 여부와 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참고자료

추진 계획 수립

재무과 시정요구 공문

신문 보도자료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홍보 & 찾아가는 서비스

대전 본청 납세자보호관!! 잠자는 권리도 깨워서 보호한다	115
경북 영천시 지방소득세 카카오톡 채널 신고 창구 운영	120
경북 예천군 납세자 중심의 취득세 감면안내 추진	122
경기 남양주시 납세자 권리 보호 사각지대 발굴	125
전남 목포시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수동적인 지방세 인식 제고	128
대구 서구 협업부서로 바로 달려가는 지방세 코디네이터	130
전남 광양시 현장 중심 납세자보호관 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133

사례
01

납세자보호관! 잠자는 권리도 깨워서 보호한다



자치단체명 대전광역시 본청 담당자 신윤선

추진 배경

‘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안내하여 잠자는 권리도 깨워서 보호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세무조사는 특성상 대량·반복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지조사권과 같은 여러 가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경우는 대응수단이 부재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세무조사 모니터링 추진계획 공문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시행 보도자료

추진 내용

1.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추진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단계별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고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통해 개선사항을 세무부서에 요구하고 발전방안을 공유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하였다. 먼저 세무조사 전 단계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서 미리 쉽게 권리구제절차를 알려주는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세정과정에서 서면조사서 제출을 요구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권리보호 등 요청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안내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게 되면 세정과 의견조치를 거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체계적 매뉴얼 마련을 마련하였다.

사전 모니터링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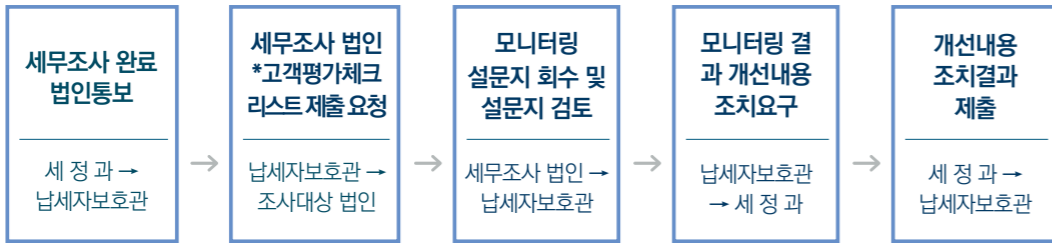
세무조사 사전 모니터링 공문

납세자 제도 안내문

리플릿 및 지방세 안내 책자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납세자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하는 사후 모니터링 실시하여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보강하였다. 세무조사 종료 법인 대상으로 “고객평가체크리스트”를 우편으로 배부한 후 작성된 리스트를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수하여 불편·불만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세정부서와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상담 등을 병행하여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를 하여, 납세자의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후 모니터링 절차



세무조사 사후 모니터링 공문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2. 코로나19 피해기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적극 추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법인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자치구 납세자보호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 세무부서에 통보하였다.

관계기관인 국세청·행정안전부·지자체 업무협력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법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법인의 신청을 통한 연장도 신청 즉시 적극 처리하도록 자치구에 시달하였다.

코로나19 납부기한 연장 안내 공문

3. 권리보호는 기본! 지방세 정보는 덤!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추진하면서 지방세 개정 내용 및 기업에 특화된 지방세 지원제도 등을 엮은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2021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동봉하여 배부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의 권리보호 업무 외에도 법인에 필요한 지방세 분야 정보를 별도로 엮은 책자를 제공하여 도움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방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친근한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여 “납세자보호관=지방세도우미” 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자 노력하였다.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2021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주요성과 및 개선방향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세무조사 종료 후 추징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사후 구제요청만 가능하였으나,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세무조사 사전·사후 모든 집행과정에서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지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법인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납세자의 불편·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에 반영토록 개선을 요구하여 납세자와 세정부서 사이에서 조정과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가게 되었다. 납세자의 NEEDS를 파악하여 향후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방향성 설정에 참고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다.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결과 분석>

2021년 대상 법인 수	사 전		사 후	
	법인 수	민원요청 건수* (권리보호, 세무 상담 등)	법인 수	고객평가체크리스트** 회신 건수
35	25	5	12	5

* 주요내용: 납세자보호관 안내 및 지방소득세 신고안내 등 일반 상담

⇒ 납세자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무지, **향후 지속적 홍보 필요**

** 고객평가체크리스트 회신내용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 답변(42~50점/50점 만점 기준)

⇒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중립적 지위에 대한 비관적 시각에서 세정부서를 인식한 답변으로 판단됨, 차후 납세자보호관의 세정부서 견제역할 강조한 안내 필요

위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직 사후 모니터링 회신률은 41%에 불과하며, 회신내용도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시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납세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세무조사 모니터링 운영방식에서 납세자의 익명성이 더욱 철저히 보호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 모니터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02

지방소득세 카카오 채널 신고 창구 운영



자치단체명 경상북도 영천시 담당자 김성균

추진 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와 시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납세자 인식 부족과 태만에 따른 미신고 및 미납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대면접촉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납세자의 편의증진 및 비대면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결방안

기존에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다시 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영천시는 지방세 카카오채널을 이용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시청 방문 없이 카카오채널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사진으로 전송하면 담당공무원은 신고내역을 확인 및 부과한 후 납세자가 원하는 납부방식에 따라 고지서 발송 또는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안내하게 된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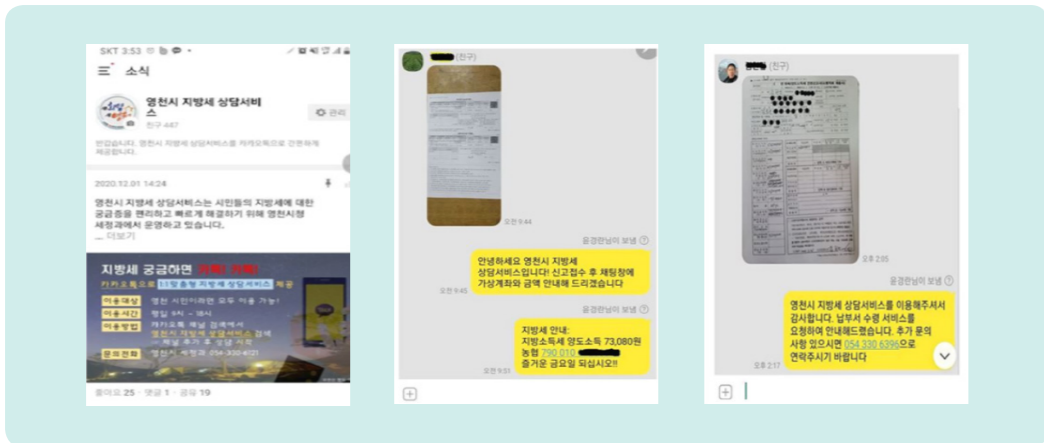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를 터치하면 검색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영천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입력하고 “영천시 지방세 상담서비스” 채널이 검색되면 채널을 추가 선택한다.



그 다음 신고서 작성 후 카카오톡 채널로 신고서 사진을 전송하면 고지서나 가상계좌 등을 안내 받고 기한 내 납부하는 순서이다.

추진결과 및 성과

이용절차의 간소화로 납세자 편의를 개선하였는데, 그 결과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원스톱신고 이용건수가 44건, 전화상담 건수가 150건으로 코로나19 현실의 반영과 선제적 대응으로 비대면 시대의 적극행정을 실현하였고 비대면 신고방식의 새로운 행정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사례 03 납세자 중심의 취득세 감면안내 추진



자치단체명 경상북도 예천군 담당자 김도윤

추진 배경

취득세는 취득목적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 세금이다. 하지만 감면을 받게 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추징사유가 있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는 신고를 하지 못해서 추징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납세자는 추징안내를 받지 못해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 더욱 억울해 한다. 여기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갈등이 발생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납세자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납세자 중심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추진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되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해야 된다. 따라서 추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납세자가 감면사항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천군에서는 3회에 걸쳐서 감면관련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다.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를 터치하면 검색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영천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입력하고 “영천시 지방세 상담서비스” 채널이 검색되면 채널을 추가 선택한다.

1. 취득세 신고한 날 바로 감면안내문 교부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면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결정되면 고지서와 함께 감면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1차 감면 안내를 한다. 납세자는 감면사유도 잘 모르면서 감면신청을 하고 추징사유도 잘 모르는 경우는 더욱 많다고 하겠다. 그래서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면 고지서와 함께 감면 통지서를 교부해서 1차 감면 안내를 한다.

2. 취득세 신고한 다음 달에 감면 안내문 2차 안내 (우편발송)

취득세의 경우 신고세목인데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등에 의해서 대리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 취득세 대리 신고가 71%나 된다.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대리신고 (건수)	3,788	2,744	3,058	2,628	2,644	2,841	2,982
총신고 (건수)	5,571	3,992	4,609	3,944	3,893	4,248	4194
대리신고율 (%)	68	69	66	67	68	67	71

위의 자료는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든 것과 추정사유를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한 다음달에 2차로 감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함으로써 납세자가 감면 사항 파악을 할 수 있고 의무 준수사항도 확인 가능하다.

3. 취득세 감면 추정사유 유예기간 만료일 전 3차 안내(우편발송)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정)에서보면 감면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감면 안내문을 한 번 더 우편발송 해서 추정사유 발생 시 납세자 본인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다.

기대효과

납세자 중심으로 취득세 감면사항을 3회에 걸쳐 안내하여 기간 종료 후 추정 및 가산세 부담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청구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납세자가 억울해 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때 납세자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참고자료

감면 안내문 취득세 신고한 날

감면 안내문 취득세 신고한 다음 달

감면 안내문 취득세 감면 추정사유 유예기간 만료일 전

사례
04

납세자 권리 보호 사각지대 발굴



자치단체명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자 장동단, 최예지

추진 현황 (또는 사실관계)

2018년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후 여타 안내문, 현수막,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온·오프 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착에 힘써왔고, 한층 발전된 활성화 사업으로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까지** 포괄적으로 권리보호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내 소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직접 방문 업무를 하는 **소액체납자실태조사TF팀(징수과)**과 **업무 협업을 계획**

추진 내용 (또는 해결내용)

1. 추진개요

- 추진 일정 : 2021. 6. 25. ~ 11. 9.
- 추진 인원 : 체납실태조사 18개반(37명)
- 운영 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운영 방법
 - * 체납자 현장 방문시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장 전달
 - * 체납자 납세자보호관 상담 연계
- 주요내용
 -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대상 및 절차 안내
 - * 체납처분의 유예, 세무상담 등 권리보호 내용
 -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2. 고충민원 사례

〈사실관계〉

납세자 K씨는 소액체납실태조사반으로부터 체납 관련 통지서와 함께 동봉된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 홍보물을 보고 지방세 고충으로 납세자보호관에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내용은 2000년 이전 사업부도로 지방세가 체납되어 차량 압류가 되었으나 201*년 **시로 주소 이전 시 남양주 지방세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체납액 5백여만이 남아 있어 급여 압

류 예고문을 받은 상태이며, 다니던 운수회사에선 급여 압류시에는 퇴사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납세자보호관에 상담을 요청했다.

〈처리과정〉

먼저 납세자의 전후 상황과 체납된 지방세의 내역을 꼼꼼히 살폈고, 상담 중 압류되었던 차량이 오래전 말소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정부서 담당자에게 부과 자료 및 차량 등록 원부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자료를 살피고 사례, 법령검토등 해결책을 모색했다.

〈처리결과〉

압류차량의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한 결과 2007년 차량 초과 말소 사항이 확인되었고, 말소일에 자동차 압류 해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 경과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확인하고, 급여 압류는 진행되지 않음으로 처리 안내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주요성과 또는 기대효과

-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 구제제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전파로 지방세 고충을 겪는 권리보호 사각지대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
- 개인별 고충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활성화 증대

계획 공문 (1)

발령일자	2021. 06. 25.	발령처	지방세과	수령처	지방세과
발령인	장동단	발령인	최예지	수령인	장동단
발령사항	지방세 권리 보호 사각지대 발굴				

지방세 권리 보호 사각지대 발굴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 방안 계획

범무 담당 관
(납세자보호관)

계획 공문 (2)

지방세 권리 보호 사각지대 발굴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 방안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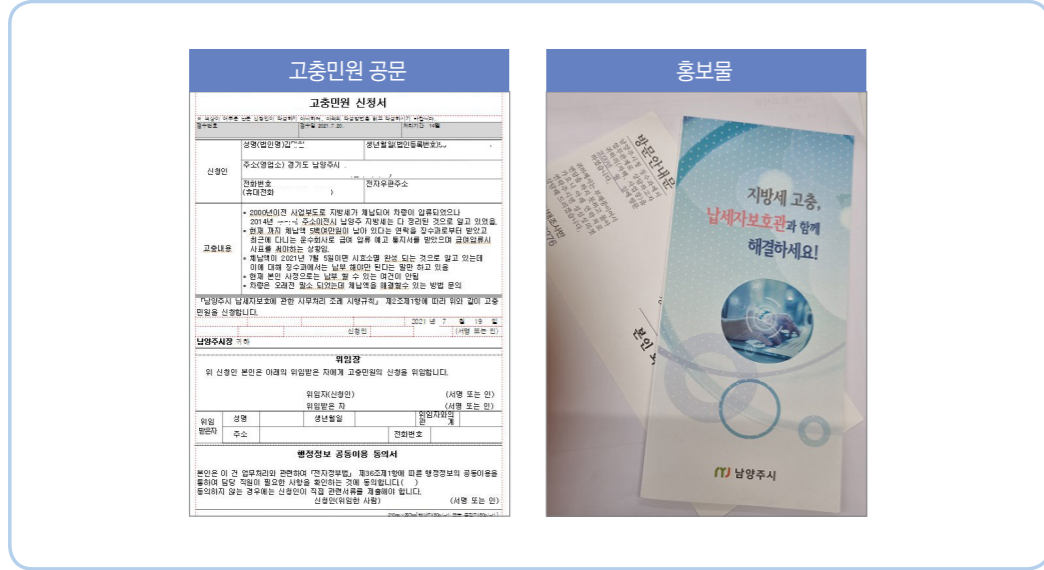
- 지방세 고충상담, 구제제도 등 온·오프 통합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액체납실태조사TF팀(징수과) 업무 협업을 계획
- 지방세 고충을 겪는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제도 안내 및 세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연계를 기하고자 함.

2. 추진 개요

- 추진 일정 : 2021. 6. 25. ~ 11. 9.
- 추진 인원 : 체납실태조사 18개반(37명)
- 운영 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300만원 초과 체납자
- 운영 방법
 - 체납자 현장 방문시 납세자보호관제도 안내장 전달
 - 체납자 납세자보호관 상담 연계
- 주요내용
 -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대상 및 절차 안내
 - 체납처분의 유예, 세무상담 등 권리보호 내용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3. 기대효과

-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 구제제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전파로 지방세 고충을 겪는 권리보호 사각지대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
- 개인별 고충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납세자보호관제도의 활성화 증대.



향후 계획

1. 고충민원 처리 사례 전파

-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민원 사전차단을 위해 관련 부서 업무 방향성 제시
- 지방세 신고, 납부, 체납 등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력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세문화 형성 추구

업무 회의



사례 05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수동적인 지방세 인식 제고



자치단체명 전라남도 목포시 담당자 김신

사실 관계

민원인은 목포시 동명동 소재 주류도매업체 (유)**물산을 2001년부터 동업자와 5:5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 하던 중 2021년 동업자의 불의의 사고로 회사지분 모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심한 경제적 압박과 사채 등으로 파산위기에 처하였다.

회사지분을 모두 인수하더라도 과점주주가 성립되어 추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고, 설상가상 2021년 정기 목포시 세무조사 통보를 받는 등 불안감과 심적 압박에 시달리던 차 목포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 게 회사의 현 상황 등에 대한 세무상담을 요청하였다.

추진 내용

1. 민원인 인적 상황

- 성 명 : 박○○(78년)
- 대상물건 : (유)**물산 → (유)**주류로 지분 변동시 예상되는 지방세
- 주요세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세무조사 관련 예상 추정세액

2. 주요 민원 내용

- (유)**물산 → (유)**주류로 상호변경 및 지분 50% 추가 인수시 예상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16,931,300원을 일시납부할 여력이 없음.
- (유)**물산 관련 2021년 목포시 정기 세무조사 관련하여 (유)**주류로 상호 및 사업자 변경시 책임 한계에 대한 이해 부족

3. 주요 처리 내용

목포시 동명동 소재 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업현황과 의견 등을 청취함과 동시에 관련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결산재무상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주식이동 명세서 등을 검토, 위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위 기업은 1995년 기업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성실납세기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코로 나19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유)**주류로 사명 변경 및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세기

본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분할납부로 유도하였다.

세무조사 관련하여 현장에서 위 기업 경리직원 등과 함께 그동안 지방세 내역 및 결산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한 바, 무작정 기업이 위기상황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것보다, 아무런 문제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 세무조사에 응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담당부서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사전 검토한 대로 추가로 추징되는 지방세가 없었다.

주요 성과

갑작스런 기업 위기상황에 놓이더라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기업인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친숙한 지방세 납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사례

06

협업부서로 바로 달려가는 지방세 코디네이터



자치단체명 대구광역시 서구 담당자 정윤희

추진 현황

납세자보호관이 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구청 내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해보았다.

평소 부서 간 협업부족으로 지방세 추징을 당한 민원때문에 안타까웠던 경험이 떠올랐다. 예를 들면,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여야 하는데 반대로 장애인 수당을 받으려면 세대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민원인과 복지부서는 이런 상반된 기준을 모르다보니 복지부서 상담만으로 당장 세대를 분리하고 장애수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결과는 바로 지방세 추징으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됐던 기억이다.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방세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이 불편 없이 one-stop으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비대면상황에 딱 맞는 적극행정라는 확신으로 「지방세 코디네이터」활동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 내용

1. 지방세 코디네이터 네이밍화

다소 어색한 납세자보호관 호칭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는 '코디네이터'와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결합해서 지방세 코디네이터로 친근하게 네이밍하여 새로운 관심을 유도하였다.

2. 방문민원이 원하면 바로 달려가서 one-stop 세무상담 실시

첫째, 각 부서 방문민원이 지방세 안내나 상담 요청시 방문부서로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줌으로써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도 병행하였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특별홍보기간을 정하여 종합민원실내 상주하면서 방문민원에게 홍보물 배부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협업부서에도 그 필요성과 편리함을 적극 홍보하였다.

3. 협업부서 내 지방세 권리구제 사각지대 적극 발굴

첫째, 지방세 다수민원 발생부서를 방문하여 더 이상 민원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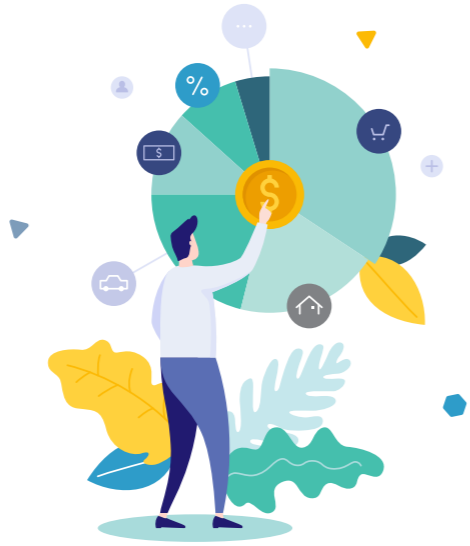
둘째 협업부서에 지방세 관련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운영과 반대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내용이나 활용 tip을 함께 작성하여 안내하였다.

협업관련하여 작성한 지방세 안내문 내용에는 ▷환가가지 없는 재산 소유로 복지급여 제외시 자동차 등 정리방법 ▷장애인 등록시 지방세 감면과 사후관리 ▷토지수용으로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기준 안내 등이다.

활동 사례

- **요 청:** 건설안전과
- **협 업:** 코디네이터, 건설안전과, 세무과
- **내 용:** 납세자의 토지일부와 건물전부를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을 위해 매입했으나 계획 지연으로 주택용토지 소유자로 2주택자가 되어 올해부터 시행하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적용에서 배제되고 복지관 노인일자리 선발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 격노함
- **해 결:** 건설안전과에서 협업 요청한 사례로 우리 구의 사정으로 계획이 늦어진 터라 납세자 편에서 해결책을 꼭 찾아주기를 간청하였음. 세법상 주택용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보였지만 일말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민원인, 해당부서 담당자와 현장을 방문했음. 외관상 누가 봐도 주택이었지만 단전, 단수 기간, 주민전산망, 건물현황 등 장기간 방치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단서를 세밀하게 수집하여 세무과와 마라톤협의 끝에 주택외 용도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했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코디네이터 활동의 길이 보였고 세법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납세자의 마음으로 행정을 하면 해결책이 보인다는 확신이 들었음.



추진 성과

세무부서가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이 코디네이터 활동을 한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니 그 역할에 다들 생소해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에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주고 협업부서와 연계된 지방세의 핀셋안내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부서 간에도 신뢰가 쌓이고 민원의 만족도도 높아 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예약을 통해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1:1 기업맞춤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설사업자 지방세 감면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달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보호관 이전에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 했는데 납세자보호관은 최선 그 이상의 것을 하게 하며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리 구의 「지방세 코디네이터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지방 코디네이터 홍보

▶ 홈페이지 연계 홍보문

구정별장시 지방세 고충이 발생하면 「지방세 코디네이터」 ■ 이용하세요!

□ 기 관 : 상 시

□ 코디네이터 : 납세자보호관 (☎ 053-663-2153)

□ 역 할 : 각 부서 업무처리시 지방세 도움이 필요한 민원계 지방세 상담 및 관련부서 연계 등 납세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끌어 주는 역할

□ 운영방법

- 협업부족으로 다수민원 발생 부서 방문 지방세 안내
- 각 부서에서 지방세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코디네이터 연계

□ 협업부서

민원사항	관련부서	활동내용
장애인 등록	사회복지과	· 장애인 등록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및 시후관리 안내
차량 등 재산 소유로 복지급여 신청 불가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행정복지센터	· 재산기대산정에 포함되는 차량 등에 대한 정리·처분방법 상담
일반음식점 등 영업허가	위생과	· 등록면허세 부과 관련 사항 안내 · 휴·폐업시 부과 기준일 사전 안내
소상공인 공장설립 플	경제과	· 등록면허세 부과 관련 사항 안내 · 창업 중 감면 관련 사항 사전 안내
전축 인·허가 신고	건축주택과	· 건축물 허가시 부과되는 지방세 · 취득세 자진신고에 관한 사전 안내
토지수용으로 부동산 대체취득	건설안전과	· 보상금으로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안내
가파 면허·인·허가 신고	전 부서	· 등록면허세 부과 관련 사항 안내 · 휴·폐업시 부과 기준일 사전 안내



사례
07

현장 중심 납세자보호관 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추진



자치단체명 전라남도 광양시 담당자 정명균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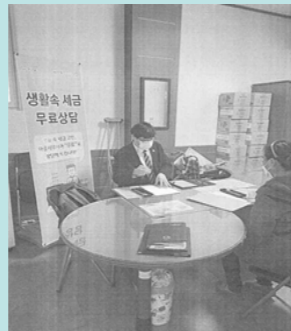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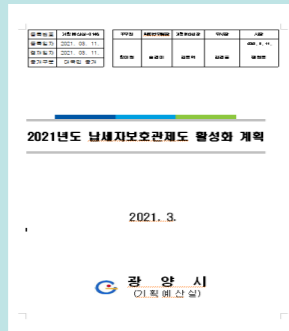
2018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잦은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상담을 받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세무부서 세목 담당자와의 전화상담 위주로 상담이 진행되고 다수의 민원을 상대하는 각 세목담당자는 바쁜 업무 시간 중에 납세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권익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납세자보호관 활동강화와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추진 내용

1.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

연초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상담실은 3월부터 10월까지 무료법률상담,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활동을 접목하여 총 6차례 실시되었고 상속, 부동산 취득, 개인회생 등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에 동반되는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위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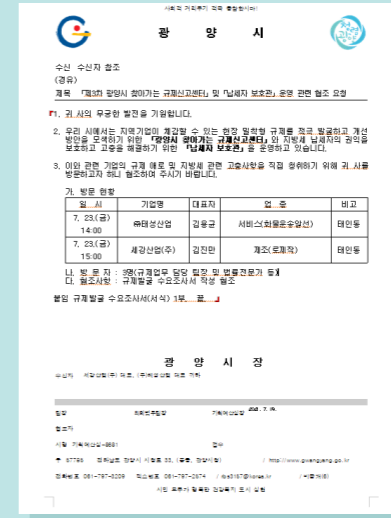
참고자료



2.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연계한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센터 연중 운영

시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와 납세자보호관 현장 활동을 연중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감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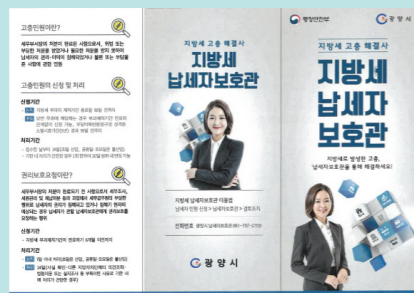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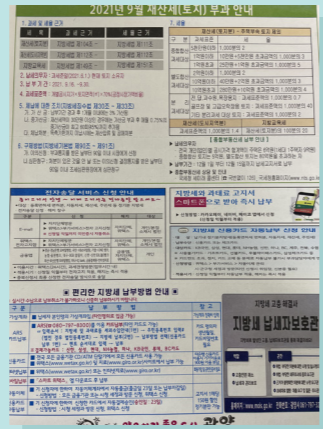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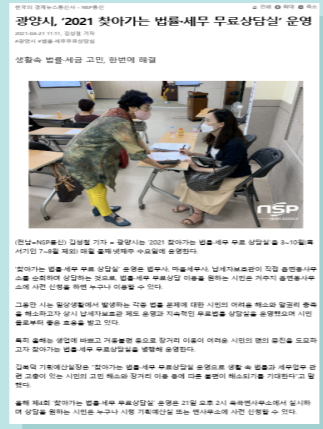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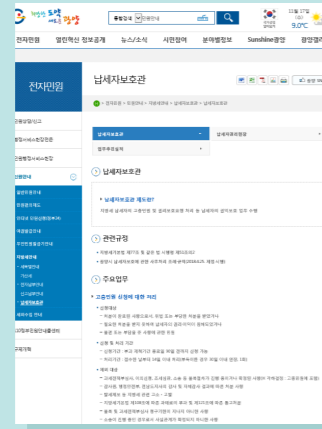
참고자료



3. 다양한 홍보활동 연중 실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권리보호요청 및 신청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 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였고 정기분(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여백 홍보와 블로그, 신문 보도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추진 결과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장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또한,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고지서, 신문, 블로그,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면서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4편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발표대회 수상사례



01 대상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할아버지의 하소연

02 최우수상

1. 납세자 권익보호~ 만렙이 되어보자.
2. 언텐트 시대 SNS로 만나는 납세자보호관

03 우수상

1. 납세자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고충해결사
2. Do you have any tax concerns?

대상
01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할아버지의 하소연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당자 최상수

사실 관계

민원인은 청담동소재 상가를 2003년 2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매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는데, 민원인의 재산세토지분이 동일 건축면적 인근상가보다 많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원인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토지지분이 인근상가보다 21.49㎡ 더 크게 등재되었던 사항으로 이를 시정하고자 관할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등을 수습차례 방문하여 시정 또는 해결하는 방법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리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고질민원 취급과 부서간 민원기관 등으로 고령인 민원인에게 고충과 심적·경제적 고통만 유발하였다.

민원 내용

1. 민원인 인적사항

- 성명 : 서○○(남편, 84세), 김○○(처, 76세 - 물건소유자)
- 물건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성○○아파트 상가동 4호
- 물건지 현황(재산세 과세면적) ----- 2020. 07월 현재(단위:㎡)



구분	상가6호	상가5호	상가4호	상가3호	상가2호	상가1호	비고
건물	46.82	27.05	27.05	27.05	27.05	27.05	공용면적 포함
토지	50.99	29.5	50.99	29.5	29.5	29.5	상가4호 면적 상이

2. 민원요지

상가는 모두 6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가6호를 제외한 상가1호에서 5호까지는 건축면적과 토지면적이 동일한데 상가4호 토지지분만 50.99㎡로 타 상가대비 21.49㎡ 더 많이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관할등기소와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 토지면적 경정을, 세무과에는 과납된 재산세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내용	부동산등기부	재산세 과세대장
1)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토지면적 50.99 ㎡ 를 → 29.5 ㎡ 경정요청 2) 재산세 - 2019년까지 과다납부된 재산세(토지)분 환급		

추진 내용

1. 사전검토

부동산 등기관련 민원은 관할 등기소 소관업무이지만 민원의 귀결점은 착으로 과세된 재산세 환급과 정당한 납세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가 환급되려면 과세근거가 되는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경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등기관련 민원도 함께 해결하고자 제출된 고충민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1) 먼저 상가4호만이 50.99㎡ 가 등재될 근거가 부족했다. 상기 상가는 1999년 11월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것으로 대지권 연명부가 있었다. 대지지분이 일정하지 않는 공유자연명부와 달리 대지권 연명부는 소유자별 토지지분의 총합과 재건축토지의 총합이 1:1인 경우에 작성되는 것으로 최초 등기시 착오기재가 의심되는 부분이었다.
- 2) 상가1호부터 5호까지 등기부,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 공부를 확인하였고 공부상 상가4호만이 토지지분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 3) 재산세는 2006년~2019년까지 토지면적 50.99㎡로 과세되었고 납부한 세액은 현재까지 16년간 총 19,236,730원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4) 검토과정에서 인터넷민원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 상가4호가 29.5㎡라고 기재된 토지대장을 발급받았다. 해당 대장은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5) 마지막으로 인근 상가5호가 1999년 11월경에 등기부 등본상 토지면적이 50.99㎡로 등재되었다가 착오기재란 사유로 29.5㎡로 경정 처리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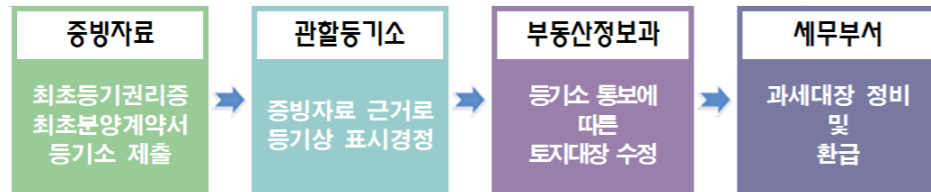
2. 현장확인

부동산정보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가현장, 그리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

- 1) 상가1호와 5호가 동일한 건축면적을 실측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과의 면담에서 1999년 재건축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서류를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았다
- 2)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등기소로부터 토지면적 표시경정에 따른 통보를 받아야만 변경되며, 부동산정보과에서 등기소로 표시변경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 3)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등기소에서 확인사항은 담당자가 직접 해결책의 가부를 알려주는 구청과 달리 등기소는 관련민원 담당은 전혀 만날 수 없었고, 등기소내 별도 마련된 상담창구에서 자원봉사인 법무사와 직원간 상호순번제로 운영되는 상담직원에게 해결책을 문의할 수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경정 전문 법무사에게 업무위탁하라는 권유만 받았다.

3. 종합적인 판단-경정가능 예측

전체적인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결과, 부동산 등기표시경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증빙자료만 준비된다면 물건소유자가 직접방문 등기표시경정신청서 제출로 쉽게 해결될 것 같았다.



4. 문제점 봉착 -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사실관계 및 현장조사 완료후 쉽게 끝날 것 같은 민원이 난관에 봉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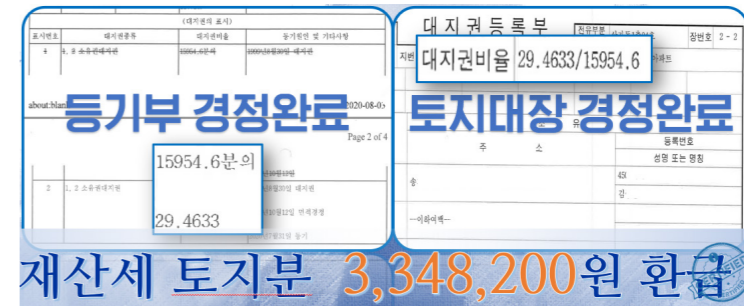
- 1) 민원인에게 최초등기권리증이 없었다. 해당상가는 신축이후 3번의 소유권변경이 있었는데, 2번째 소유권 변경시 경매로 인한 소유권변동 될 때 없어진 것으로 추측되었다.
- 2) 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초분양관련서류가 없음을 통보받았다. 4~5일간 찾아보았지만 해당서류는 모두 폐기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인해 등기표시경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구할 수 없었다.
- 3) 무엇보다 인터넷민원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 29.5㎡라고 기재된 토지대장에 대해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후 등기부 표시내용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답변으로 50.99㎡로 직권재경정을 하였다 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실망과 민원인에게 더 큰 분노를 유발했다.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할 부서에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했다.

- 4) 등기소는 2~3번 재방문에도 별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다.
- 5) 1999년 11월경 상가5호가 착오기재 사유로 경정된 것과 같이 해당 4호상가도 분명 착오기재일 것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져 버렸다.

5. 부동산 등기표시 경정등록 신청-의외의 결과

오랜 심사숙고와 재검토 끝에 우리가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할아버지를 만나 관할등기소에 제출 하였다. 제출된 서류는 등기관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의문이 있을시 민원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떠한 연락도 없이 제출 3일후 부동산등기부에서 해당 토지가 29.5㎡ 착오기재 경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각하될 것 같았던 민원이 즉시 변경된 사유가 궁금하였지만 추측컨데 해당 아파트가 공유자등록부 존재가 아닌 대지권등록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부동산등기표시 경정에 따라 토지대장이 수정되었으며, 할아버지에게는 2020년 8월 21일 3,348,200원의 재산세가 환급되었다. 한달간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모두 해결되니 적극행정으로 인한 할아버지의 만족감은 물론 우리 팀장과 팀원의 성취감은 표현할 길이 없었다. 납세자보호관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파급효과 및 시사점

1. 파급효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등에 착오 기재된 자료가 할아버지 부동산 1건만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법무부 소관 등기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구청의 토지자료 및 재산세 과세자료등 빅데이터를 상호 교차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비과세감면자료, 환급대상 자료, 납세자정보 착오자료 등을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징가능 과세자료도 추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최대한 정비하여 작게는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크게는 정당한 재산권과 납세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 시사점

부동산등기 표시경정 신청은 등기소 소관업무로 용어자체도 생소하고, 경미한 변경등록도 쉽지 않아 법무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고충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여 증빙자료와 정보가 부족함에도 등기소 소관사항으로 배제하지 않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 끝에 등기소관련 민원과 세무관련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였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해결과정에서 참조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 할 것이다.



최우수상

02

납세자 권익보호 ~ 만렙이 되어보자



자치단체명 경기도 수원시 담당자 홍수정

납세자 권익보호에 만렙이 되고자 하는 의지

만렙이라는 단어는 만(滿)+level을 합성한 신조어로 주로 게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레벨시스템이 적용된 캐릭터, 스킬 등이 최대치에 이른 단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납세자보호관으로서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분야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만렙 캐릭터가 되어보자는, 앞으로의 납세자보호관으로서의 방향성이나 다짐의 표현이다.

추진 현황

이러한 만렙 캐릭터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에서는 여러 시책을 추진하였는데 첫 번째로 납세자 고충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및 두 번째로 비대면시대 온택트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세 번째로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였다.

추진 내용

수원시에서는 납세자 고충해결을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시책을 추진하였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세무 상담DAY 운영

수원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세무 상담DAY를 운영하였다. 이는 지방세(납세자보호관)와 국세(세무사)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로서 시장 상인회와 연락해서 원하는 날짜를 잡고 마을세무사 협조를 얻어 수원에 있는 화서시장 권선시장 역전시장 등등 전통시장을 현장 방문(코로나19 직전)하여 세무상담을 하였다.

이는 상인들이 고민하던 세금문제에 대한 고충도 해결하는 한편,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한 고충이 있을 때 납세자보호관이나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린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납세자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지방세 업무토론회 개최

납세자보호관으로서 납세자 고충 해결이나 권익보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선 세무부서와의 소통과 협조는 필수일 것이다. 이에 수원시는 세정 총괄부서인 세정과, 징수총괄부서인 징수과와 수원의 4개(장안, 권선, 팔달, 영통) 구청 세무부서 담당자들과 주기적으로 토론회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불편해 할 만한 사항이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법을 논의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납세자 불편사항 등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영세 체납자의 환가치 없는 차량, 멸실 인정 차량 및 매매가 불가한 부동산 등 압류 실익이 없음에도 장기간 압류가 되어 있어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많고 체납액으로 인한 고충이 큼 	징수과(체납추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후 10년 이상 방치(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차량, 부동산, 보험금, 법원공탁금 등)된 압류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압류실익 분석을 통해 • 실익 없는 압류건은 주기적인 체납처분 중지 추진을 통해 납부능력 없는 영세 납세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신고업무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당위성 및 중복 여부 검토와 사례공유 업무연찬 	세정과 및 각 구도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신고서류 확인 및 신속 체크리스트 안내 등으로 납세자의 정확한 취득세 신고를 위한 처리방안 마련 • 취득세 신고업무 처리 관련 사례 공유 및 최신 판례 공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 해결 사례

#. 사례 1

- ○○구 ○○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 중인 납세자 ○○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사업장 장기 미운영으로 자금경색이 와서 해당구청 재산세팀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 평소 ○○동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며 지방세 납기 내 납부로 체납액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지방세 성실 납세자였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다보니 사업에 위기가 왔다고 하였다.
- 이에 ○○구와 납세자보호관은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와서 지방세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재산세 1.4억원 가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징수유예 결정을 하였다.
- 납세자가 지방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 사업의 위기를 타파 할 수 있는 징수유예 결정을 함으로써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사례 2

- ○○구 ○○동 거주하는 ○○○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폐차대행 업체에 폐차를 의뢰후 말소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저당권 등의 문제로 원부를 정리하지 못한 채 1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다.
- 가족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가정형편도 어렵고 차량 등록번호도 기억나지 않는 사실상 멸실된 차량의 원부 상 소유자로 되어있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도와 줄 수가 없었고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체납이 되어 있었다.
- 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한 사례이다
- 납세자보호관은 우선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으로 차량 압류되어 있고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의 소유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한 바 자동차 등록 원부상 멸실 인정을 받으면 아픈 가족을 위한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그리하여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 등록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납세자에게 멸실 인정 절차를 안내하였고 2020. 10. 5 차량등록원부상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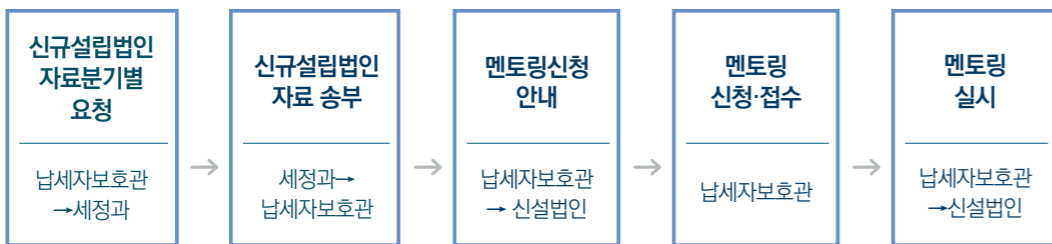
-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징수부서에 멸실인정을 받은 해당차량의 체납액에 대한 지방세 23건 308,640원에 대한 결손 검토 요청을 하고 자동차 압류해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실상 소유하지도 않은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 정리 및 원부상 멸실 인정을 받게끔 도와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자가 정말 필요했던 의료급여 혜택 등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려 납세자에게 삶의 의지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언택트? no! 온택트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홍보

수원시에서는 현장을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나 고충해결 방법 이외에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수원시 공장등록 기업(1,239개소)의 51.25%(739개소)가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인 수원델타플렉스를 관리하는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홍보하고 지방세분야 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 및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하고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판례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추후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기업을 위한 지방세 Q&A 코너 및 사례 공유 등으로 실시간 지방세 업무지원을 위한 방안을 늘리고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신규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수원시에서는 2020년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이 멘토가 되어 멘토링 신청법인(13개소)에 대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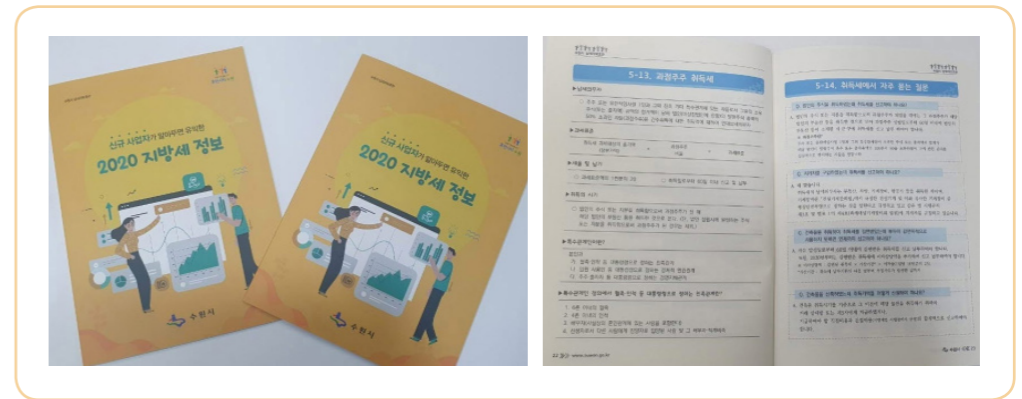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문자 또는 알림톡을 활용하여 지방세 정보를 전송하는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은 마을세무사의 협조를 얻어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여 국세□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처음엔 창업초기이다 보니 신규사업자들이 강의에 크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듯 하였으나, 지금은 창업단계이지만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어 개인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나 중과 등 세금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수 있다고안내하였더니 강의에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는 등 신규사업자의 호응속에 성공리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2020 지방세 정보」책자를 제작하여 신규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각 구청 민원창구에도 비치하여 방문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책자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전자책[지방세알림e]8월호에 자치단체 칼럼으로 게재되는 등 그 활동을 인정 받았다.



주요성과 또는 향후 기대효과

이러한 사업을 통해 납세자보호관으로서 납세자들에게 불편사항으로 다가올 만한 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맞춤형 고충 해결에 노력하였다. 어디서나 무엇이든 어떻게든 납세자 권익보호를 도모,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물리적 공간을 극복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루트를 발굴 시도 하였으며 창업초기에 꼭 알아야할 지방세 안내 등 신규 사업자를 위한

멘토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및 창업법인의 사업 성공을 간접 지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업무에 한계를 두지 말고 납세자보호관의 역량을 만렙이란 용어처럼 극대화하여 만렙 캐릭터로서 납세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시책을 펼칠 것이다.

수원메타플렉스 홈페이지 홍보



멘토링사업 언론보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전자책 「지방세알림 8월호」 게재



최우수상

03

연택트 시대 SNS로 만나는 납세자 보호관



자치단체명 대구광역시 서구 담당자 이형주

추진 배경

- 대구광역시 서구는 2018년 11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하였다. 시행 1년차에는 제도시행 알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에 매진하였다.
- 그러나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대한 낮은 관심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였다.
 - 납세자보호관의 적극 행정으로 찾아 낸 멸실인정 대상 차량소유 납세자의 '자동차세 감액'과 무익한 체납 처분에 대한 중지를 통한 '압류 해제' 등 170건 66,223천원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으나,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고충민원은 9건(89,989천원)에 불과하였다.
- 시행 2년차인 올해는 지난해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민접점을 활용한 홍보 활동과 현장 중심 대면상담 활동을 강화하고자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 그러나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실천 강화로 대면 접촉이 불가능 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저 또한 업무추진에 소통의 광장이 되고 있는 SNS를 활용하여 대민활동을 대신하였으며, 그 활동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추진 내용

연택트 시대 Seogu SNS망을 통한 납세자권리 찾아주기

-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과 장기화로 국민들의 심리적 고통과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직·간접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경영난과 재정적 어려움을 버텨내기가 한계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주민 및 기업들의 세제지원책을 발빠르게 시행하였으며, 특히 대구시는 '20.3.15.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지원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조금이라도 세부담을 덜었으면 하고 서구 SNS와 홈페이지에 확대된 세제지원책을 게시하고, 세무부서의 각종 신고서류에 세제지원에 대한 안내 내용을 동봉하여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 하였다.

SNS 속 홍보전략 「지방세 카드뉴스」 만들기

- 또 복잡한 지방세 제도와 상식 그리고 최근개정 지방세관련 법을 SNS 홍보에 적합한 카드뉴스로 만들어 구청밴드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게시된 내용은 공유 확산되어 종이 홍보물보다 더 밀도 있게 지방세 관련 소식들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TIP!」 지방세 콘텐츠 마련

-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TIP!」이라는 지방세 콘텐츠를 만들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금정보와 과세기준일만 알아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지방세 알짜 정보들을 SNS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 좀 더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카카오톡 특 오픈 채팅방 활용 「온택트 지방세 상담실」 운영

-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특 오픈 채팅 방을 활용 「대구 서구 온택트 지방세 상담실」을 개설하여 비대면 시대에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1:1 지방세 상담실”에 접속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다.

- 시행초기라 아직까지 이용 접속자는 많지는 않지만 구청 밴드와 페이스북을 공유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알림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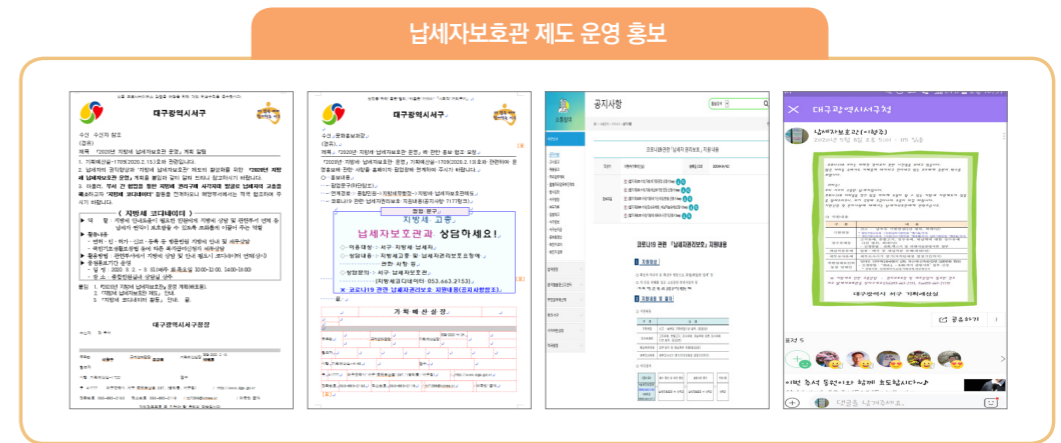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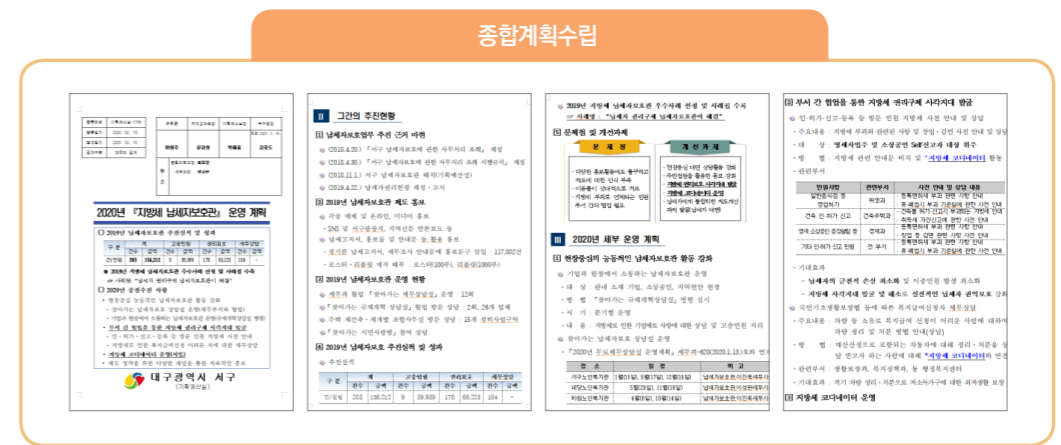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피해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기에 홍보하여 기한연장 등 신청으로 57건 68,884천원 세제지원 효과가 있었으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11,144건 704,543천원 감면을 받고
- 또한, 복잡한 지방세 제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로 납세자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적으로는 기존 종이 홍보물 제작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식과 구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미지로 납세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제도의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 온라인채팅방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2020년은 전혀 마주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다.

언택트시대 행정업무는 기존 매뉴얼인 아닌 새로운 시도로 변화의 몸살을 겪고 있다.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복귀되더라도 코로나 이후의 생활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 납세자보호관제도 역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전과 납세자 편에서 세무행정을 바라보는 납세자보호관의 시각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방세 카드뉴스 콘텐츠 제작(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TIP!)



온택트 지방세 상담실 운영 홍보



우수상 04

납세자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고충해결사!



차지단체명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자 김미란

추진 배경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납세자보호관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소극적으로 찾아오는 민원만 처리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정착과 호응을 이끌어 낸 사례를 「납세자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고충해결사」라는 세 가지 주제로 소개하려 한다.

추진 내용

1. 납세자의 고충해결사

1. 맞춤형 납세자 보호 서비스 실시

창원시는 맞춤형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첫째, 납세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대리인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간소화와 분업화를 추진했다. 이로써 납세자는 복잡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납세자보호관은 확보된 자료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둘째, 납세자 경제사정에 맞추어 분납시기와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예상 매출에 따라 납부액을 차등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납세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지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형편에 맞춘 신속한 대처로 '20년 10월말 기준 89억원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 안내 공문



언론 보도



2.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기존 관공서 위주의 홍보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를 추진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대형마트, 산업단지 등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로 뛰는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개인납세자 지방세 지원신청 접수수가 2019년 2건에서 2020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납세자 조세불복시 조력 제공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는 법 조항을 잘 몰라 이의신청을 할 때 주요 쟁점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서민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은 도움을 요청하는 납세자에게 법조항과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입각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조력을 제공했고 취득세 1건, 61백만원의 부과취소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II. 납세자를 위한 고충해결사

오류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 직권 감면 추진	기초수급자 체납액 결손처분																																		
<p>오류 과세자료의 선제적 정비 계획</p> <p>I. 추진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상의 이력을 등으로 폐업한 사업자가 주요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환급 추진 이렇게 과잉(과과)과공에서 발생한 오류의 선제적 정비를 통해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신뢰 회복 도모 <p>II. 추진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기간 : '20. 2. 3 ~ 2. 28 추진내용 : 과세 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에게 주요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환급, 감액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 포사제목 : 주민세(관청), 주민세(계산관), 동북면부세(면허관) 	<p>- 지방세 감면 행태 개선을 통한 - 중소기업 권익 보호 계획</p> <p>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 점검하여 누락분야에 대해 적극 감면조치함</p> <p>I. 지방세 감면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가 아닌 환급대상자가 국가정책적인 목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납세할지라도, 감면 또는 환급으로 납세부담이 경감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함 감면대상자는 주로 납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집중 <p>II. 현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자 감면 혜택, 토건 지원 기업에 증가 관련 법률 및 조례 미흡으로 감면에서 제외 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신청, 제 제정 입지 장애' 부동산 업종 부호번호 지원 불능 관련 부서 담당자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이해 부족 부서간 행정 부호번호 소극적 홍보, 행정 간(국/시/군/구) 상호 연계 <p>III. 세부계획</p> <p>가. 포사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청 행정 대수(403개 일제) 국/시/군/구 제1 국/시/군/구 제2 국/시/군/구 제3 국/시/군/구 제4 국/시/군/구 제5 국/시/군/구 제6 국/시/군/구 제7 국/시/군/구 제8 국/시/군/구 제9 국/시/군/구 제10 	<p>사회적 약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계획</p> <p>사회적 약자의 경우 불능한 채납액에 대해 과잉한 권손처분을 시행하여 생계형 채납자들의 사회적 재기를 돕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함</p> <p>I. 현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시 기초수급자 체납액 현황(단위: 억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부</th> <th>시</th> <th>군</th> <th>구</th> <th>시</th> <th>군</th> <th>구</th> <th>시</th> <th>군</th> <th>구</th> <th>시</th> <th>군</th> <th>구</th> <th>시</th> <th>군</th> <th>구</th> </tr> </thead> <tbody> <tr> <td>총액</td> <td>331</td> <td>387</td> <td>80</td> <td>149</td> <td>44</td> <td>42</td> <td>44</td> <td>36</td> <td>79</td> <td>87</td> <td>72</td> <td>73</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II.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시 기초수급자(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창원시 기초수급자(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창원시 기초수급자(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p>III.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시 기초수급자(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창원시 기초수급자(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창원시 기초수급자(대상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구분	부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총액	331	387	80	149	44	42	44	36	79	87	72	73				
구분	부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총액	331	387	80	149	44	42	44	36	79	87	72	73																								
부과	감면	징수																																		

1. 폐업일 이후 착오 부과된 지방세 환급 추진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법을 잘 모르고 생업이 바쁘다보니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고지서 뒷면의 부과 안내 사항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도 거의 없다. 창원시는 폐업일 이후 착오 부과된 면허세, 주민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730건, 24백만 원의 지방세를 감액, 환급하였다. 이의신청에 의해서만 오류를 바로잡던 소극적 행정 행태에서 납세자보호관이 부과 오류 자료를 찾아 부과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업체에 대한 직권 감면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이란 납세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감면이 직권으로 이루어지려면 부과담당자들이 적극행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각 감면자료를 허가부서로 부터 통보받아 관리해야 한다. 요청해야만 통보하는 현재의 소극적 협업체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다. 창원시는 누락되기 쉬운 기업체 감면자료를 일제 점검하여 403건, 87백만원의 직권 감면을 추진함으로써 소극적인 협업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3. 사회적 약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손 처분 추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체납세가 있어도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니 해결 의지가 없다. 창원시는 사회보장급여시스템을 통해 입증된 무재산(무능력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료를 추출하여 체납 매칭작업을 통해 331명, 387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다. 이로써, 매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기초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재기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III. 납세자에 위한 고충해결사

1. 납세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추진

2020년부터 재산세 분납 기준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정되었다. 이 제안은 납세자가 납세의 불편함을 호소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세 제도개선은 매년 실무자들만의 아이디어로 제출되고 개정되어 왔는데, 이런 편향적인 제도개선은 납세자의 기대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창원시는 납세자로부터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신청서)으로 의견을 접수받아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입법”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 납세자들의 개정 안건이 다수 접수되어 내부 검토 중이다.

오류 과세자료 정비

- 납세자가 직접 참여하는 -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계획

납세자에게 과세권자와 같이 직접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제정 안주도를 제고하고자 함

I 추진배경

- 과세권장 변화와 납세자 주요 중재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필요
- 실무자 주도의 편향적 제도개선의 한계 극복
- 납세자 의견수렴을 통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II 추진실적


연도별	제안자	제안건	처리	처리율	향기감도
2018	15	0	2	100	3
2019	12	0	1	0	3
2020	9	0	2	0	1

■ 채택된 안건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반영

언론 보도

인사이드뉴스통신

창원시, “현행 지방세 제도 개선사항 제안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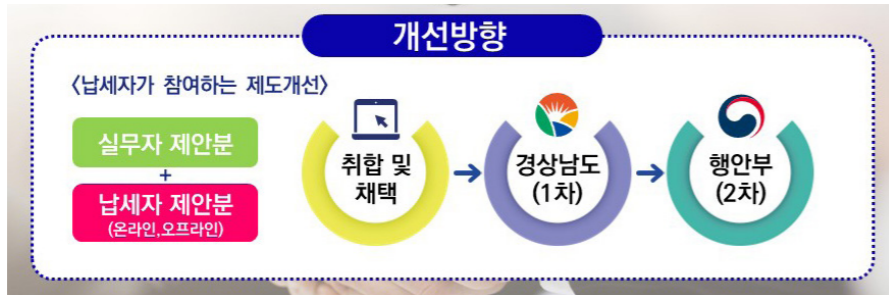
[인사이드뉴스통신-창원내 거점] 창원시청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접수”를 전담하고 국민생활 질을 제고 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행 제도개선 의견 접수창구”는 과세권장 변화의 환경적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납세자에게 직접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세 부과와 징수 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이나 구청 세무과에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최종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선정,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창원시청은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관을 발족할 예정이다.




💡 맺음말

납세자보호관은 세정의 협력자와 감시자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적극행정의 선두 주자로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적극행정 마인드’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의 돌파구가 될 것이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정착과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상
05

Do you have any tax concerns?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당자 김민하

📌 추진배경 및 현황

1. 구로구에 외국인이 많다?

세계적인 지구촌화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도 국정과제로 다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구로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의 숫자가 많고 다문화정책과가 있어 다문화정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를 더해갈수록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노동자가 경제기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로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거주 비율 12.5% 로 전국4%, 서울시4.6%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구로공단에서 시작된 구로 디지털단지과 구로역, 대림역으로 이어지는 편리한 교통이 때문에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다.

[서울시 구로구 외국인 현황]

(2019.12.31 / 단위 : 명)

구분	계	남	여	비고
계	54,984	28,970	26,014	- 구로구 인구 대비 12.5%
등록 외국인	33,275	18,991	14,284	(전국 대비 4% / 서울시 대비 4.6%)
외국국적 동포	21,709	9,979	11,730	*최다 거주지 : 구로2동 *최소 거주지 : 구로1동

※ 구로구 민원여권과 등록외국인 기준 참조

[서울시 구로구 다문화가족 현황]

(2018.11.1 / 단위 : 세대)

구분	계	중국	중국 (한국계)	미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기타
결혼이민자	3,062	749	1,753	58	158	39	15	110	180

※ 2019.11.1자 행정안전부 공표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연평균 0.5~1% 증가)

[외국인 근로자]

(2018.11.1 / 단위 : 명)

계	중국	중국 (한국계)	미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기타
14,859	86	14,472	32	45	34	25	6	159

※ 2019.11.1자 행정안전부 공표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연평균 0.5~1% 증가)

추진 내용

2. 전국최초!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세무상담 실시

2018년 12월8일 구로구 가리봉동에 가족통합지원센터(다문화가족과 외국인중심)가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과 감사실에서는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세무상담을 고민하게 되었다. 가족통합 지원센터에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기간제 직원이 있어 유사시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문을 여는 것이 우선 고려되었다. 하지만 세무업무를 위한 세무종합설치가 어려워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가리봉동 주민센터에 행정, 세무 전산등을 갖추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첫째, 셋째주 화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세무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구로구내 지하철역 등 12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였으며 구청 앞 엘리디게시판에 외국인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소설치를 홍보하였다. 또한 통장회의를 통해 통장님들로 하여금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게 안내문을 전달하여 세금문제가 있다면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전화로 상담할 것을 전달하였다.

전국최초,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소」에 대한 기대는 뜨거워 전국 주요일간지, 연합뉴스 등 20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행정 및 경제면의 기사로 다루었다. 그리고 경남 **시, 서울**구, 경기도 **시에서 벤치마킹 관련 공문을 보내고 방문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관련 자료를 기꺼이 공유하였다. 경남 **시는 농촌도시라 농촌관련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른 **구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여 세금문제에 대한 상담이 요구되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세무 상담을 처음 진행하고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가 중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외국인거주자들을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안내문이 전달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도중에 케이비에스 라디오 방송 진행자에게 인터뷰요청 전화가 왔다. 『보고싶은** 그리운***』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들과 연변지역 한국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었다. 여기 프로그램 중에 동포들이 알아야하는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서울시 구로구의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을 취재하여 방송되었다.

2020년 2월 첫째주 화요일 10시에 외국인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3명과 납세자보호관 그리고 인터뷰방송 라디오진행자와의 대담이 녹취되었다. 내용은 외국인들이 세금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납세자보호관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라디오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구로구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을 홍보하였다.

상담 유형별 분석

3. 우리구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모습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총 67건이며 지방세 30건 국세 37건으로 국세는 간단한 상담과 안내위주로 진행하였다. 정착하여 살아가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노동자가 많아 근로소득세에 대한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적은 중국계 한국인,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터키, 브라질, 필리핀, 캄보디아, 스페인, 미국 등 여러 나라들도 많아 세계화 추세를 보여주었다.

상담을 진행함에 따라 국세부분에 대한 마을세무사와의 협업이 더욱 필요함을 느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경제적인 위치가 노동자이거나 개인영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노사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노무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NOW! 세무상담과 노무상담을 함께 (향후 계획)

20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세무상담과 노무상담의 합동상담소를 열 계획이다.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마을세무사의 협조를 얻어 구로구 납세자보호관이 월2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세무 노무 합동상담센터 (가칭)를 개소하려고 기획 중에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세금문제에 대하여도 친근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구로구는 더욱 노력할 것이다



참고자료

문화일보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1면 2열

구로구, 다문화·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 서비스

세 2개에 가입불응구민센터서

▶ 서울 구로구는 다문화·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외국인 세무 상담 서비스 센터'를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 1층에 개소했다. 이는 구로구-외국인 주민의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 관련 업무를 돕고 상담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로구도 뉴스 9월 19일 보도.

센터는 구로구-외국인 주민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로구도 뉴스 9월 19일 보도.

구로구 관계자는 "다문화·외국인 주민의 세무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민신문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00면 1열 1행

외국인 주민, 전문가가 세무상담

구로구 주민센터 1층에

▶ 구로구 구로동 구로구청 1층에 '다문화·외국인 세무 상담 서비스 센터'가 개소했다. 이는 구로구-외국인 주민의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 관련 업무를 돕고 상담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로구도 뉴스 9월 19일 보도.

센터는 구로구-외국인 주민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로구도 뉴스 9월 19일 보도.

구로구 관계자는 "다문화·외국인 주민의 세무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녁뉴스 서울 구로구, 다문화·외국인 세무 상담 서비스센터 운영

▶ 서울 구로구는 구로동 구로구청 1층에 '다문화·외국인 세무 상담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구로구-외국인 주민의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 관련 업무를 돕고 상담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로구도 뉴스 9월 19일 보도.

센터는 구로구-외국인 주민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로구도 뉴스 9월 19일 보도.

구로구 관계자는 "다문화·외국인 주민의 세무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 2020년 다문화·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 서비스

▶ 서울 구로구는 구로동 구로구청 1층에 '다문화·외국인 세무 상담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구로구-외국인 주민의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세무 관련 업무를 돕고 상담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로구도 뉴스 9월 19일 보도.

센터는 구로구-외국인 주민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로구도 뉴스 9월 19일 보도.

구로구 관계자는 "다문화·외국인 주민의 세무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대상 세무 상담·도움 등의 언어로 제공해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광역	기초	부서	전화번호	비고
서울	본청	법무담당관	02-2133-6688	
	종로구	감사담당관	02-2148-1225	
	중구	감사담당관	02-3396-4425	
	용산구	감사담당관	02-2199-6273	
	성동구	감사담당관	02-2286-5074	
	광진구	감사담당관	02-450-7081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02-2127-4006	
	종랑구	감사담당관	02-2094-0212	
	성북구	감사담당관	02-2241-4901	
	강북구	감사담당관	02-901-6034	
	도봉구	감사담당관	02-2091-2064	
	노원구	세무1과	02-2116-3055	
	은평구	감사담당관	02-351-6078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02-330-1022	
	마포구	감사담당관	02-3153-8181	
	양천구	감사담당관	02-2620-3045	
	강서구	감사담당관	02-2600-6479	
	구로구	감사실	02-860-3296	
	금천구	민원감사담당관	02-2627-2265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24	
동작구	감사담당관	02-820-9580		
관악구	감사담당관	02-879-5133		
서초구	감사담당관	02-2155-6311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156		
송파구	감사담당관	02-2147-2089		
강동구	감사담당관	02-3425-5033		
부산	본청	법무담당관	051-888-2305	
	중구	기획감사실	051-600-4031	
	서구	민원봉사과	051-240-4271	
	동구	민원회계과	051-440-4261	
	영도구	기획감사과	051-419-4084	
	부산진구	민원여권과	051-605-4885	
	동래구	기획감사실	051-550-4056	
	남구	소통감사담당관	051-607-4914	
	북구	민원봉사과	051-309-4262	
	해운대구	감사담당관	051-749-6221	
	사하구	청렴감사실	051-220-4055	
	금정구	기획감사실	051-519-4055	
	강서구	기획감사실	051-970-4016	
	연제구	감사담당관	051-665-5063	
	수영구	기획감사실	051-610-4056	
	사상구	기획감사실	051-310-4057	
	기장군	열린민원과	051-709-4266	

광역	기초	부서	전화번호	비고
대구	본청	법무담당관	053-803-2610	
	중구	기획예산실	053-661-2143	
	동구	기획예산과	053-662-2145	
	서구	기획예산실	053-663-2153	
	남구	기획조정실	053-664-2144	
	북구	기획조정실	053-665-2982	
	수성구	기획예산과	053-666-4274	
	달서구	청렴감사실	053-667-2022	
	달성군	법무감사실	053-668-3785	
	인천	본청	법무담당관실	032-440-2205
중구		기획감사실	032-760-7052	
동구		기획감사실	032-770-6932	
미추홀구		기획예산실	032-880-4056	
연수구		감사실	032-749-7133	
남동구		소통협력담당관	032-453-2161	
부평구		기획조정실	032-509-6096	
계양구		기획예산실	032-450-5053	
서구		기획예산실	032-560-4063	
강화군		기획예산과	032-930-3402	
옹진군		법무감사과	032-899-2764	
광주		본청	법무담당관	062-613-2770
	동구	법무감사관	062-608-2281	
	서구	감사담당관	062-360-7299	
	남구	기획실	062-607-2131	
	북구	감사담당관	062-410-6902	
	광산구	감사관	062-960-8074	
	대전	본청	법무통계담당관	042-270-3425
동구		감사실	042-251-6653	
중구		민원봉사과	042-606-6401	
서구		감사위원회	042-288-4323	
유성구		감사실	042-611-2888	
대덕구		감사평가실	042-608-6262	
울산		본청	법무통계담당관	052-229-2290
	중구	주민소통과	052-290-3112	
	남구	감사관	052-226-3411	
	동구	민원지적과	052-209-3812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052-241-7272	
	울주군	민원지적과	052-204-0162	
세종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300-2851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광역	기초	부서	전화번호	비고
경기	본청	법무담당관	031-8008-2866	
	수원시	법무담당관	031-228-3974	
	고양시	법무담당관	031-8075-2362	
	용인시	법무담당관	031-324-3194	
	성남시	감사관	031-729-2149	
	부천시	감사담당관	032-625-2444	
	안산시	감사관	031-481-2682	
	화성시	감사관	031-5189-6115	
	남양주시	법무담당관	031-590-3989	
	안양시	감사관	031-8045-5827	
	평택시	감사관	031-8024-2193	
	의정부시	기획예산과	031-828-2279	
	파주시	감사관	031-940-5971	
	시흥시	시민고충담당관	031-310-3669	
	김포시	기획담당관	031-980-2312	
	광명시	감사담당관	02-2680-2025	
	광주시	기획예산담당관	031-760-8462	
	군포시	기획예산담당관	031-390-0054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	031-645-3056	
	오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31-8036-7094	
	하남시	청렴감사관	031-790-5221	
	양주시	기획예산과	031-8082-5153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	031-550-2076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031-678-5475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060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031-345-2266	
	여주시	감사법무담당관	031-887-2035	
	양평군	회계과	031-770-2174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	031-860-2032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	02-3677-2034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	031-580-2088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031-839-2053		
강원	본청	교육법무과	033-249-2215	
	춘천시	기획예산과	033-250-4398	
	원주시	자치행정과	033-737-2283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5	
	동해시	기획감사담당관	033-539-8361	
	태백시	기획예산담당관	033-550-2462	
	속초시	공보감사담당관	033-639-1510	
	삼척시	기획감사실	033-570-3218	

광역	기초	부서	전화번호	비고	
강원	홍천군	기획감사담당관	033-430-2043		
	횡성군	기획감사실	033-340-2012		
	영월군	기획혁신실	033-370-2376		
	평창군	기획실	033-330-2397		
	정선군	기획관	033-560-2221		
	철원군	기획감사실	033-450-4583		
	화천군	기획감사실	033-440-2377		
	양구군	기획감사담당관	033-480-2153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	033-460-2013		
	고성군	기획감사실	033-680-3302		
	양양군	기획감사실	033-670-2104		
	충북	본청	법무혁신담당관	043-220-2334	
		청주시	감사관	043-201-1167	
충주시		감사담당관	043-850-5035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	043-641-5071		
보은군		기획감사실	043-540-3042		
옥천군		기획감사실	043-730-3082		
영동군		기획감사관	043-740-3083		
증평군		기획감사관	043-835-3142		
진천군		기획감사실	043-539-3045		
괴산군		민원지적과	043-830-3489		
음성군		기획감사실	043-871-3062		
단양군		정책기획담당관	043-420-2092		
충남		본청	교육법무담당관	041-635-3224	
		천안시	예산법무과	041-521-5128	
	공주시	기획예산담당관	041-840-2031		
	보령시	기획감사실	041-930-3141		
	아산시	기획예산과	041-540-2942		
	서산시	감사담당관실	041-660-2217		
	논산시	행정지원과	041-746-5048		
	계룡시	정책예산담당관	042-840-2072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041-350-3131		
	금산군	기획조정실	041-750-2243		
	부여군	기획조정실	041-830-2064		
	서천군	기획감사실	041-950-4011		
	청양군	기획감사실	041-940-2041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041-630-1964		
	예산군	기획담당관	041-339-7134		
	태안군	기획감사실	041-670-2713		
	전북	본청	법무행정과	063-280-2887	
전주시		감사담당관	063-281-2184		
군산시		감사담당관	063-454-4441		
익산시		기획예산과	063-859-5716		

전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광역	기초	부서	전화번호	비고	
전북	정읍시	감사과	063-539-5121		
	남원시	감사실	063-620-6227		
	김제시	기획감사실	063-540-2971		
	완주군	기획감사실	063-290-2831		
	진안군	기획홍보실	063-430-2829		
	무주군	기획실	063-320-2172		
	장수군	기획조정실	063-350-2056		
	임실군	기획감사실	063-640-2053		
	순창군	기획예산실	063-650-1135		
	고창군	기획예산담당관	063-560-2258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063-580-4123		
	전남	본청	법무담당관	061-286-2642	
목포시		기획예산과	061-270-8205		
여수시		기획예산과	061-659-3442		
순천시		감사실	061-749-3488		
나주시		기획예산실	061-339-8271		
광양시		기획예산실	061-797-3209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	061-380-3035		
곡성군		기획실	061-360-2543		
구례군		기획예산실	061-780-2409		
고흥군		군정혁신단	061-830-5218		
보성군		기획예산담당관	061-850-5040		
화순군		기획감사실	061-379-3252		
장흥군		총무과	061-860-5571		
강진군		기획홍보실	061-430-3027		
해남군		혁신공동체과	061-530-5218		
영암군		기획감사실	061-470-2317		
무안군		기획실	061-450-5218		
함평군		기획감사실	061-320-1442		
영광군		기획예산실	061-350-4665		
장성군		기획실	061-390-7212		
완도군		총무과	061-550-5210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26		
신안군		기획홍보실	061-240-8660		
경북		본청	법무혁신담당관	054-880-2257,8	
		포항시	예산법무과	054-270-2642,3	
		경주시	정책기획관	054-779-6067	
	김천시	기획예산실	054-420-6053		
	안동시	공보감사실	054-840-5052		
	영주시	기획예산실	054-639-6042		

광역	기초	부서	전화번호	비고
경북	영천시	정책기획실	054-330-6056	
	상주시	공보감사담당관	054-537-7059	
	문경시	기획예산실	054-550-6861	
	경산시	기획예산과	053-810-5086	
	군위군	기획감사실	054-380-6046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	054-830-6464	
	청송군	기획감사실	054-870-6044	
	영양군	기획예산과	054-680-6172	
	영덕군	정책기획담당관	054-730-6042	
	청도군	기획예산담당관	054-370-2042	
	고령군	기획감사실	054-950-6052	
	성주군	기획감사실	054-930-6042	
	칠곡군	기획감사실	054-979-6054	
	예천군	기획감사실	054-650-6041	
	봉화군	기획감사실	054-679-6061	
	울진군	기획예산실	054-789-6533	
	울릉군	기획감사실	054-790-6051	
	경남	본청	법무담당관	055-211-2512,5
창원시		법무담당관	055-225-2308	
진주시		기획예산과	055-749-8276	
통영시		공보감사담당관	055-650-3242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055-831-2265	
김해시		법무담당관	055-330-0813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055-359-5818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055-639-3186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55-392-2122	
의령군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31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055-580-2514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055-530-1094	
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	055-670-2073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055-860-3057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2	
산청군		기획조정실	055-970-6022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	055-960-4033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3	
합천군	기획감사관	055-930-3045		
제주	본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	064-710-2387	
	제주시	기획예산과	064-728-2263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064-760-221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발행일자	2021년 12월
발행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집필·편집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하종목 행정사무관 박미정 지방행정사무관 송은주

(서울)은평구 이수미, 영등포구 김창일, 강남구 최상수 / (부산) 영도구 정진욱, 사하구 조영민, 수영구 반경숙 / (대구) 동구 정성구, 서구 정윤희 / (인천) 연수구 유은정 / (광주) 동구 최익준, 광산구 박홍수 / (대전) 본청 신윤선, 대덕구 송연조 / (경기) 수원시 김영신, 남양주시 장동단, 최예지 / (충북) 보은군 김세진, 옥천군 이유정, 단양군 이미선 / (충남) 청양군 조정희 / (전북) 남원시 박용권 / (전남) 목포시 김신, 광양시 정명균, 보성군 공영배, 장흥군 조기우 / (경북) 영천시 김성균, 청도군 김병욱, 예천군 김도윤 / (경남) 창원시 김미란, 김해시 서수진 / (제주) 서귀포시 조혜정

〈비매품〉